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2007. 11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	10
1. 중소기업 현황	10
2. 중소기업의 범위	16
3.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19
III.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26
1. 미 국	26
가. 중소기업 현황	26
나. 중소기업의 범위	31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36
2. 영 국	39
가. 중소기업 현황	39
나. 중소기업의 범위	42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44
3. 일 본	46
가. 중소기업 현황	46
나. 중소기업의 범위	51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54
4. 대 만	55
가. 중소기업 현황	55
나. 중소기업의 범위	58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60

IV.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62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62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65
3. 조세지원 단계별 중소기업의 범위	66
가.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67
나. 연구개발 지원	69
다. 설비투자 지원	69
라.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72
마. 기타지원	72
참고문헌	75
부록: 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76
I. 우리나라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76
II. 미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89
III. 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94
IV. 일본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97
V. 대만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103

표목차

〈표 II-1〉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11
〈표 II-2〉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12
〈표 II-3〉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13
〈표 II-4〉 산업별 생산액(매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	14
〈표 II-5〉 산업별 경영조직형태 현황	15
〈표 II-6〉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15
〈표 II-7〉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17
〈표 II-8〉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19
〈표 II-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 대상업종	21
〈표 III-1〉 미국의 기업 수 추이	27
〈표 III-2〉 NAICs Code 분류에 의한 주요 산업별 종업원 있는 기업 현황	29
〈표 III-3〉 NAICs Code 분류에 의한 주요 산업별 소기업 증가율	30
〈표 III-4〉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31
〈표 III-5〉 미국의 산업별 소기업 기준	32
〈표 III-6〉 영국 중소기업의 규모별·산업별 기업체 수	39
〈표 III-7〉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40
〈표 III-8〉 영국 중소기업의 규모별·산업별 매출액(생산액) 규모	41
〈표 III-9〉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42
〈표 III-10〉 영국의 중소기업 판정기준	42
〈표 III-11〉 유럽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규정	43
〈표 III-12〉 산업별·규모별 기업 수	46
〈표 III-13〉 산업별·규모별 종업원 수	48
〈표 III-14〉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50

〈표 Ⅲ-15〉 중소기업 매출액의 GDP 비중	51
〈표 Ⅲ-16〉 중소기업 근거법 및 기준	52
〈표 Ⅲ-17〉 법인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세율	53
〈표 Ⅲ-18〉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55
〈표 Ⅲ-19〉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56
〈표 Ⅲ-20〉 부문별 종업원 수 현황	57
〈표 Ⅲ-21〉 산업별 생산액(매출액) 현황	58
〈표 Ⅲ-22〉 대만의 중소기업 기준	59
〈표 Ⅳ-1〉 중소기업 범위의 양적 기준 비교	63
〈표 Ⅳ-2〉 중소기업 범위의 질적 기준 비교	64
〈표 Ⅳ-3〉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 근거	66
〈표 Ⅳ-4〉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	68
〈표 Ⅳ-5〉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연구개발 지원)	70
〈표 Ⅳ-6〉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설비투자 지원)	71
〈표 Ⅳ-7〉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73
〈표 Ⅳ-8〉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기타)	74

I. 서론

- 우리나라 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외형 위주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머물렀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다든가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였음.

-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1990년대부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됨.
 - 즉,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의 추세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제환경으로 변화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창업, 경영안정, 투자촉진, 연구개발, 판로, 입지, 지역개발 등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에서 특히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경기상황의 변화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세지원이 그 시점에 그 대상에 대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여부, 지원대상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조세지원의 관리·통제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¹⁾,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 서비스업인 경우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는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국가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으로서 공통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님.
 - 또한 특정 국가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적정하게 정해졌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 중소기업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정연승 외(2006)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과 행동전략을 조사하여 범위기준에의 시사점을 얻고 있음.
 -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지 않고 제도적 측면

1)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000인이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에서 각국의 중소기업 범위뿐 아니라 각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주요국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논한 후에, 이를 토대로 제 IV 장에서는 각 국가별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

1. 중소기업 현황

- 1993~2004년 기간 중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1~99.8%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 전체 종업원에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7~87.0%로서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993년에 137만개에서 2004년에 299만개로 118.8%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종업원 수는 1993년에 538만명에서 2004년 1,041만명으로 93.5% 증가함.
 - 전체 사업체 수는 1993년 대비 2004년에 117.6% 증가하고, 전체 종업원 수는 1993년 대비 2004년에 58.0% 증가함.
 - 최근 10년간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사업체 수의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이 훨씬 큰 증가율을 보임.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표 Ⅱ-2>에서와 같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299만개로 집계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99.8%를 차지하는데, 이 중 소기업이 97.0%, 소상공인이 89.2%임.
 -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이 89.2%를 차지함으로써 영세업체가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단위: 개, 명, %)

연도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1993	1,380,281	7,616,260	1,370,175	5,382,167	99.3	70.7
1994	1,412,198	7,936,301	1,401,238	5,674,500	99.2	71.5
1995	2,628,774	11,377,378	2,613,689	8,864,036	99.4	77.9
1996	2,657,781	11,597,969	2,643,351	9,102,920	99.5	78.5
1997	2,697,098	11,100,491	2,672,983	8,260,062	99.1	74.4
1998	2,629,868	10,177,797	2,607,710	7,659,010	99.2	75.3
1999	2,777,986	10,829,961	2,769,012	8,866,001	99.7	81.9
2000	2,864,134	11,530,908	2,854,081	9,677,648	99.6	83.9
2001	2,876,817	11,650,034	2,871,951	9,969,797	99.8	85.6
2002	2,953,124	11,975,672	2,948,171	10,385,020	99.8	86.7
2003	3,004,105	12,041,387	2,999,297	10,474,630	99.8	87.0
2004	3,003,180	12,036,330	2,998,223	10,415,383	99.8	86.5

주: 연도별 자료의 대상 업종이 상이함.

1995년 이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대상

1996~1998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단, 중소기업 일반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농업, 임업, 수렵업, 금융보험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 등 제외)

1999~2000년: 중소기업법 및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전 업종 대상(단, 중소기업 일반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전기업, 수도사업, 철도운송업, 우편업, 유선통신업, 통화금융기관, 저축기관, 개발금융기관, 투자신탁회사, 공공기금관리회사,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초등·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수용복지시설, 기타 비수용복지사업, 회원단체 등의 업종은 제외)

2001년 이후: 개인 및 회사법인 형태의 전 업종(단, 전산업 중 중소기업 일반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전기업, 수도사업, 유선통신업, 통화금융기관, 저축기관, 개발금융기관, 투자신탁회사, 공공기금관리회사,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단독사업체 및 본사만 포함하고 지사는 제외)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현황』, 2006.

○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고 운수업은 100%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및 서비스업도 9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음.

〈표 II-2〉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기업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농업 및 임업	523	97.8	358	66.9	184	34.4	535	100.0
어업	126	98.4	57	44.5	29	22.7	128	100.0
광업	1,837	99.9	1,808	98.4	1,391	75.7	1,838	100.0
제조업	326,269	99.8	317,788	97.2	268,157	82.0	327,054	100.0
전기, 가스, 수도사업	314	98.1	81	25.3	22	6.9	320	100.0
건설업	82,945	99.9	81,163	97.7	66,860	80.5	83,053	100.0
도매 및 소매업	872,663	99.9	847,793	97.1	794,725	91.0	873,472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642,800	99.9	632,658	98.4	586,851	91.2	643,153	100.0
운수업	329,032	100.0	326,961	99.3	321,285	97.6	329,148	100.0
통신업	5,492	99.5	4,469	81.0	3,097	56.1	5,517	100.0
금융 및 보험업	8,251	96.1	6,963	81.1	6,016	70.1	8,587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100,500	99.7	96,644	95.8	91,029	90.3	100,838	100.0
사업서비스업	80,767	98.6	68,149	83.2	50,317	61.4	81,893	100.0
교육서비스업	98,370	99.6	92,060	93.2	78,595	79.6	98,799	100.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8,999	99.9	54,557	92.4	42,435	71.8	59,069	10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23,132	99.8	121,480	98.5	116,917	94.8	123,331	100.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66,203	99.9	260,420	97.7	249,960	93.8	266,445	100.0
산업 전체	2,998,223	99.8	2,913,409	97.0	2,677,870	89.2	3,003,180	100.0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임.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종업원 수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임.

3. 2004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현황』, 2006.

- 2004년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표 II-3〉과 같이 약 1,042만명임.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종업원이 86.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소상공인 종업원도 43.3%로 상당부분을 차지함.
-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중소기업 종업원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업원 비율이 97.4%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 종업원 비율이 40.1%로 가장 낮음.

〈표 II-3〉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명,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소상공인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농업 및 임업	4,867	86.3	1,587	28.1	484	8.6	5,641	100.0
어업	3,580	88.0	284	7.0	83	2.0	4,066	100.0
광업	15,345	92.3	12880	77.5	4,461	26.8	16,629	100.0
제조업	2,659,253	78.3	1,801,910	53.1	816,701	24.1	3,395,165	100.0
전기, 가스, 수도사업	7,802	83.7	485	5.2	67	0.7	9,320	100.0
건설업	650,299	91.0	483,558	67.7	222,664	31.2	714,506	100.0
도매 및 소매업	2,293,818	93.6	1,769,101	72.2	1,439,173	58.7	2,450,911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649,117	97.4	1,468,054	86.7	1,192,350	70.4	1,693,512	100.0
운수업	733,530	92.4	502,167	63.3	387,183	48.8	793,830	100.0
통신업	42,775	81.2	16,572	31.5	7,743	14.7	52,679	100.0
금융 및 보험업	45,779	40.1	16,903	14.8	10,858	9.5	114,274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257,409	86.7	186,540	62.8	150,485	50.7	297,061	100.0
사업서비스업	565,798	63.0	225,171	25.1	113,374	12.6	897,727	100.0
교육서비스업	360,971	91.9	236,840	60.3	152,813	38.9	392,946	100.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91,780	96.6	197,685	65.5	124,340	41.2	301,984	10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83,163	88.0	240,967	74.9	213,429	66.4	321,607	100.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50,097	95.8	441,478	76.8	375,854	65.4	574,472	100.0
산업전체	10,415,383	86.5	7,602,182	63.2	5,212,062	43.3	12,036,330	100.0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임.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종업원 수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임.
 3. 2004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현황』, 2006.

-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 비해 산업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표 II-4〉와 같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40.3~63.7%(생산액 기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당해 업종 생산액 금액만을 비교해 보면, 광공업이 385조원으로 가장 크고, 운수업이 7조원으로 가장 작음.
- 그러나 전체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건설업이 63.7%, 도소매업이 64.0%로 40%대인 광공업,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편임.

〈표 II-4〉 산업별 생산액(매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

(단위: 억원, %)

산업분류	생산액(또는 매출액)				부가가치			
	중소기업		전 체		중소기업		전 체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광공업	3,854,898	48.7	7,911,196	100.0	1,496,236	49.6	3,014,690	100.0
제조업	3,834,694	48.6	7,890,109	100.0	1,482,899	49.4	3,000,732	100.0
건설업	88,670	63.7	139,251	100.0	43,756	70.9	61,700	100.0
운수업	39,840	48.8	81,629	100.0	20,112	55.6	36,147	100.0
도소매업	286,368	64.0	447,376	100.0	n.a.	n.a.	n.a.	n.a.
서비스업	73,131	40.3	181,459	100.0	n.a.	n.a.	n.a.	n.a.

- 주: 1. 광업, 제조업 : 종업원 5~299인 기준임.
 2. 건설업, 운수업 : 종업원 1~299인 기준임.
 3. 도소매업, 서비스업 : 자료의 제약상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업원 수 1~19인 기준임.
 4. 광공업, 제조업은 '생산액',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매출액', 운수업의 매출액은 '운수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5.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투입비(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을 공제한 것임.
 6. 2004년 기준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현황』 재편집.

□ 중소기업 전체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9%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인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농업 및 임업, 어업에서 조사된 중소기업은 모두 법인사업체로 파악되며,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도 법인사업체 비중이 50% 전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규모와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는 모두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대비 2004년 GDP 증가율은 7.5%인 데 반해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4.7%로 GDP 증가율보다 낮은 성장세에 있음.

○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995년은 1.0배, 2000년은 1.6배, 2004년은 1.5배로 2000년 이후로 변화폭이 감소함.

〈표 II-5〉 산업별 경영조직형태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개 인		법 인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농업및임업	n.a.	n.a.	523	100.0	523	100.0
어업	n.a.	n.a.	126	100.0	126	100.0
광업	1,206	65.7	631	34.3	1,837	100.0
제조업	267,451	82.0	58,818	18.0	326,269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153	48.7	161	51.3	314	100.0
건설업	45,277	54.6	37,668	45.4	82,945	100.0
도매및소매업	801,272	91.8	71,391	8.2	872,663	100.0
숙박및음식점업	637,574	99.2	5,226	0.8	642,800	100.0
운수업	310,869	94.5	18,163	5.5	329,032	100.0
통신업	4,264	77.6	1,228	22.4	5,492	100.0
금융및보험업	5,680	68.8	2,571	31.2	8,251	100.0
부동산및임대업	89,474	89.0	11,026	11.0	100,500	100.0
사업서비스업	56,136	69.5	24,631	30.5	80,767	100.0
교육서비스업	95,195	96.8	3,175	3.2	98,370	100.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8,859	99.8	140	0.2	58,999	100.0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20,661	98.0	2,471	2.0	123,132	100.0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260,426	97.8	577	2.2	266,203	100.0
산업전체	2,754,497	91.9	243,726	8.1	2,998,223	100.0

- 주: 1. 법인은 상법상 회사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을 말함.
 2. 산업전체 개인사업체의 수는 농업및임업, 어업을 제외한 합계임.
 3. 2004년 기준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현황』, 2006.

〈표 II-6〉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단위: 억원, %)

	1995	2000	2003	2004		
				금액	2003년 대비 증가율	
GDP	3,988,377	5,786,645	7,246,750	7,793,805	7.5	
중소기업 매출액	광공업	1,687,237	2,663,010	3,398,828	3,558,653	4.7
	제조업	1,672,334	2,648,706	3,380,091	3,539,383	4.7
	건설업	339,382	515,002	836,834	886,710	6.0
	도소매업	279,089	2,633,200	2,775,810	2,863,680	3.2
	서비스업	147,870	523,115	665,524	731,319	9.9
	계	4,125,912	8,983,033	11,057,087	11,579,745	4.7
GDP 대비 매출액 비중	103.4	155.2	152.6	148.6	△2.4	

- 주: 1.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출하액) 자료가 파악되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작성.
 2. 광공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개인사업체와 상법상 회사법인 사업체 대상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1997, 2006.

2. 중소기업의 범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개별 정책별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법 등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입법화되어 있는데, 개별 법률마다 정의규정을 두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따르도록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양적 기준이란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표 II-7>과 같음.
 -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채택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본금이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임(택일 기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만 자본금 기준을 채택하며, 나머지 업종은 모두 매출액 기준을 제시함.
 - 질적 기준이란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표 II-7〉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업 종	중 소 기 업 ¹⁾	소기업 ²⁾	소상공인 ³⁾
		상시근로자수	
제 조 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주: 1)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1〉

2) 중소기업법시행령 제8조

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법상 양적·질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함(중소기업법 제2조 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비영리 법인·단체 등

○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중소기업법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음(중소기업법 제2조 4항, 제19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²⁾에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보다 축소되어 있음.

-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따르고 있음.
 - <표 II-8>과 같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은 중소기업법을 따르는 반면, 적용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강화된 졸업기준을 정하고 있어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과 차이가 있음.
 - 즉, 중소기업법은 모든 업종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표 II-9>와 같이 대상 업종을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규모기준이 아무리 작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경우 <표 II-9>과 같이 별도로 대상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따르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임.

2) 법인세법 규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따르고 있음.

〈표 II-8〉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업종	○ 모든 업종	○ 지원내용별로 해당업종에 차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①, 동법§6③ 및 §7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
규모기준	○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 - 제조업 :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원 - 건설업 :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원 - 도매업 :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 중소기업법과 같음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소기업법과 같음
졸업기준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적용유예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그 후에는 매년 판단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 광업·제조·건설·운송 : 50인 미만 -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제조 : 100인 미만 -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 기타 : 10인 미만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2007.

3. 조세지원³⁾별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① 중소기업법 제2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⑤ 중

3)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한 경우도 포함

중소기업법을 적용하면서 특별법상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표 II-9>와 같음.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조특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의 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각각의 적용 산업을 열거하고 있음.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 대상과 그 범위가 유사함.
 - 단, 조특법 제7조의 범위에는 추가적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되고 영화산업 중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을 제외한다는 차이가 있음.
 - 조특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으로서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등 상당 부분의 산업이 제외되고 부가통신업 및 방송관련업 등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음.
 - 조특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조특법 시행령 제2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조특법 제6조 및 조특법 제7조와 같이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특별법에서는 조특법상의 산업 구분과는 달리 설립시기, 연구개발비, 총자산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를 조세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요건,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신기술사업자’를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II-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 대상업종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 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공연산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포장 및 충전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선박관리업, 분노 등 관련 영업, 토양정화업		-
영화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만 제외)	부가통신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만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등 〈표 II-9〉에 제시된 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법에서 제시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을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함.
 -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산입연도 종료 후 3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함.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 보호시스템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은 손금산입함.
-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영위업자 제외)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타인이 보유한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또는 이용하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이용비용의 7%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전환전 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일 이후 3년간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5년 이상 계속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중소기업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제휴상대물류법인)과 자기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교부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함.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최저한세율이 10%로 대기업(15%)보다 우대 적용함.
- 접대비 기준금액이 1,800만원으로 대기업(1,200만원)보다 우대 적용함.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한도에서 환급신청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와 조특법 제7조와는 달리 건설업, 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 취득세 또는 등

록세를 면제하며, 법인설립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며,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감면 비율(5~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감면함.

- 다음의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조특법에서 별도의 범위 규정 없이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함.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함.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을 만족하면서 특별법에서 제시한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창업투자조합,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으로서 내국법인 또는 창업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장래 2년 안에 속하는 과세연도⁴⁾에서 거주자가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 산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4)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1. 미국

가. 중소기업 현황

-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법적인 형태는 각 주의 법(business law)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과세목적상으로는 C법인, S법인,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십(partnerships),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5가지 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됨.
 - 2002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업형태는 개인회사이고 전체 기업의 72%를 차지하였음.
 - 그 다음으로 S법인이 12%, C법인이 8%, 파트너십이 5%, LLCs가 3%를 차지하였음⁵⁾.
 - 소득이나 자산 규모 또는 종업원의 수 측면에서 C법인이 커야 한다든가 도관 형태의 기업이 작아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은 있음.
 - 예를 들면, 2001년에 C법인의 평균자산 규모는 파트너십 평균보다 5배 컸고 S법인 평균보다 35배 컸음⁶⁾.

- 미국의 경우 통계청 자료⁷⁾에 의하면 2004년 총 기업(private firms⁸⁾) 수는

5) 세금신고서(return)를 기준으로 한 것임(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2004~2005, pp. 128~131).

6)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pring 2004.

25,409,525개이며, 이 중 종업원 없는 기업⁹⁾이 19,523,741개, 종업원이 있는 기업이 5,885,784개임.

- 종업원이 있는 5,885,784개 기업 중에서 SBA가 정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기준¹⁰⁾인 500인 미만인 기업은 5,868,737개로 종업원 있는 기업 중 약 99.7%가 중소기업에 해당함.
- 따라서 종업원 없는 기업과 종업원 500인 이하 기업을 합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2004년에 25,392,478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함.

〈표 Ⅲ-1〉 미국의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

	기업 수 (private firms) (A+B)	소기업 (A+C)	종업원 없는 기업(A) (non-employers)	종업원 있는 기업(employer)			
				계(B)	500인 미만 기업 수(C)	비중	500인 이상 기업 수
1997	20,981,527	20,965,448	15,439,609	5,541,918	5,525,839	99.71	16,079
1998	21,287,904	21,271,526	15,708,727	5,579,177	5,562,799	99.71	16,378
1999	21,760,347	21,743,607	16,152,604	5,607,743	5,591,003	99.70	16,740
2000	22,182,499	22,165,346	16,529,955	5,652,544	5,635,391	99.70	17,153
2001	22,637,272	22,619,905	16,979,498	5,657,774	5,640,407	99.69	17,367
2002	23,343,821	23,326,976	17,646,062	5,697,759	5,680,914	99.70	16,845
2003	24,416,241	24,399,315	18,649,114	5,767,127	5,750,201	99.71	16,926
2004	25,409,525	25,392,478	19,523,741	5,885,784	5,868,737	99.71	17,047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

□ 우리나라나 일본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기업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소기업(small business)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음.

7)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

8) 회사(Firm)란 동일한 주와 동일한 산업 내에서 하나 이상의 국내 사업장(establishment)이 있는 사업체(business organization)를 말함. 회사(Firm)와 사업장은 단일 사업장 회사인 경우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복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 동일한 주에서 동일한 산업에 있는 사업장들은 하나의 회사로 집계됨.

9) 종업원이 없는 기업은 자영업자(self-employment)를 포함하지 않음.

10) 소기업 기준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기준이 500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인, 파트너십, 개인회사(sole proprietor) 등 기업형태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음.
-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및 임금 비중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종업원 없는 1인 기업은 고용과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업원 있는 기업(employer firm)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및 연간급여를 산출하였음.
 - 2004년 종업원 있는 기업이 총 588만개였고 고용인원은 1억 1,507만명이므로 기업당 19.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총 급여로 4조 2,540억달러를 지급하였음.
 - 종업원 5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총 587만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5,860만명이므로 기업당 약 1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총 급여로 1조 9,174억 달러를 지급하였음.
 - 전체 종업원 있는 기업 중 종업원 500인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하지만 고용인원은 50.9%, 연간급여는 45.1%에 불과함.
 - 산업별 고용인원과 급여는 <표 Ⅲ-2>와 같음.
- <표 Ⅲ-3>은 2004년도의 기업 수 및 고용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기업 수는 부동산 및 임대업과, 예술 및 오락업이 각각 4.7%, 4.5%로 증가율이 두드러짐.
 - 고용인원 면에서 보면, 광업과 건설업이 5.1%와 4.7%로 높게 나타남.
 -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이 두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약 25%를 차지함.

〈표 Ⅲ-2〉 NAICs Code 분류에 의한 주요 산업별 종업원 있는 기업 현황

(단위: 개, 명, 천달러, %)

	종업원 있는 기업(employer firm)			종업원 있는 기업 중 종업원 500인 미만인 기업					
	기업 수	고용인원	연간급여	기업 수	비중	고용인원	비중	연간급여	비중
총계	5,885,784	115,074,924	4,253,995,732	5,868,737	99.7	58,597,452	50.9	1,917,364,605	45.1
임업, 어업, 수렵, 농업지원	24,873	182,121	5,224,036	24,782	99.6	n.a.	n.a.	n.a.	n.a.
광업	18,605	470,280	26,749,492	18,290	98.3	211,124	44.9	10,410,821	38.9
공익사업	6,695	634,734	44,765,847	6,501	97.1	107,513	16.9	5,521,623	12.3
건설	751,098	6,647,641	268,268,185	750,120	99.9	5,745,598	86.4	222,543,388	83.0
제조	293,461	13,821,976	592,829,838	289,425	98.6	6,080,495	44.0	222,513,293	37.5
도매업	337,642	5,907,051	290,576,332	334,655	99.1	3,637,296	61.6	158,798,469	54.6
소매업	734,984	15,351,431	334,018,026	732,712	99.7	6,471,679	42.2	160,988,196	48.2
운송, 창고업	164,803	4,098,870	148,244,605	162,680	98.7	1,570,948	38.3	49,400,124	33.3
정보	75,271	3,472,427	200,447,203	74,125	98.5	908,899	26.2	45,845,016	22.9
금융·보험	251,965	6,481,304	422,448,748	250,251	99.3	2,107,749	32.5	116,425,510	27.6
부동산·임대	282,765	2,086,085	74,113,918	281,557	99.6	1,442,094	69.1	48,873,044	65.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734,912	7,569,981	426,713,010	732,034	99.6	4,660,511	61.6	245,663,981	57.6
기업관리	26,626	2,824,787	222,459,177	19,827	74.5	342,554	12.1	20,081,857	9.0
행정·지원·폐기물관리·교정	310,261	8,708,052	235,542,222	306,941	98.9	3,582,942	41.1	96,244,004	40.9
교육서비스	71,232	2,893,346	80,286,352	70,127	98.4	1,329,651	46.0	32,831,006	40.9
의료보험·사회부조	588,187	15,814,812	559,838,280	584,480	99.4	7,665,652	48.5	257,073,515	45.9
예술, 오락	111,309	1,889,044	50,709,572	110,686	99.4	1,279,224	67.7	36,025,729	71.0
숙박·요식업	453,433	10,749,811	147,178,490	451,683	99.6	6,567,667	61.1	81,329,204	55.3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제외)	671,348	5,416,193	122,502,810	669,983	99.8	4,672,543	86.3	101,378,909	82.8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

□ 미국 경제에서 소규모 사업의 역할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 있는 기업(employer firm) 중에서 종업원 500인 미만인 소기업(small firm)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 정도이고, 모든 민간 부문 종업원의 절반이 소기업 종업원임.
- 또한 미국 전체의 민간부문 급여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순증가 일자리(net new jobs)의 60~80%를 차지하였음.

〈표 III-3〉 NAICs Code 분류에 의한 주요 산업별 소기업¹⁾ 증가율

(단위: 개, 명, 천달러, %)

		기업 수	증가율	고용인원	증가율	연간급여	증가율
총계	2003	5,750,201		57,447,570		1,818,493,862	
	2004	5,868,737	2.1	58,597,452	2.0	1,917,364,605	5.4
임업, 어업, 수렵, 농업지원	2003	25,050	n.a.	n.a.	n.a.	n.a.	n.a.
	2004	24,782	-1.1	n.a.	n.a.	n.a.	n.a.
광업	2003	17,896		200,974		9,482,157	
	2004	18,290	2.2	211,124	5.1	10,410,821	9.8
공익사업	2003	6,929		n.a.		n.a.	
	2004	6,501	-6.2	107,513	n.a.	5,521,623	n.a.
건설	2003	721,873	n.a.	5,487,177		209,391,444	
	2004	750,120	3.9	5,745,598	4.7	222,543,388	6.3
제조	2003	291,494		6,102,010		212,661,904	
	2004	289,425	-0.7	6,080,495	-0.4	222,513,293	4.6
도매업	2003	339,368		3,640,380		150,826,477	
	2004	334,655	-1.4	3,637,296	-0.1	158,798,469	5.3
소매업	2003	730,540		6,404,638		156,468,438	
	2004	732,712	0.3	6,471,679	1.0	160,988,196	2.9
운송, 창고업	2003	159,726		1,552,349		46,399,390	
	2004	162,680	1.8	1,570,948	1.2	49,400,124	6.5
정보	2003	74,598		921,522		45,004,797	
	2004	74,125	-0.6	908,899	-1.4	45,845,016	1.9
금융&보험	2003	242,924		2,064,617		110,183,051	
	2004	250,251	3.0	2,107,749	2.1	116,425,510	5.7
부동산&임대	2003	268,874		1,416,087		45,607,612	
	2004	281,557	4.7	1,442,094	1.8	48,873,044	7.2
전문·과학·기 술서비스	2003	711,863		4,546,690		230,715,060	
	2004	732,034	2.8	4,660,511	2.5	245,663,981	6.5
기업관리	2003	20,857		348,209		19,675,066	
	2004	19,827	-4.9	342,554	-1.6	20,081,857	2.1
행정&지원&폐기 물관리&교정	2003	296,041		3,465,385		88,839,744	
	2004	306,941	3.7	3,582,942	3.4	96,244,004	8.3
교육서비스	2003	67,883		1,305,412		31,466,612	
	2004	70,127	3.3	1,329,651	1.9	32,831,006	4.3
의료보험& 사회부조	2003	571,409		7,459,318		243,258,851	
	2004	584,480	2.3	7,665,652	2.8	257,073,515	5.7
예술, 오락	2003	105,886		1,236,704		33,973,101	
	2004	110,686	4.5	1,279,224	3.4	36,025,729	6.0
숙박&요식업	2003	436,457		6,349,472		76,427,569	
	2004	451,683	3.5	6,567,667	3.4	81,329,204	6.4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제외)	2003	668,278		4,636,125		98,016,633	
	2004	669,983	0.3	4,672,543	0.8	101,378,909	3.4

주: 1) 종업원 있는 기업 중 종업원 500인 미만인 기업임.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WWW.census.gov/csd/susb/susb04.htm).

- 전체 기업의 2002년 총매출 증가율은 1997년 대비 21.3%이고 중소기업의 총매출 증가율은 15.8%로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낮음.
- 중소기업의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97%에서 2002년에는 89.1%로 감소하였음.

〈표 Ⅲ-4〉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단위: 백만달러, %)

	GDP (십억 달러)	매출액			전체기업			소기업		
		종업원 없는 기업(A)	종업원 있는 기업(B)	종업원 500인 미만 기업(C)	매출액 (A+B)	매출액 증가율	GDP 비중	매출액 (A+C)	매출액 증가율	GDP 비중
1997	8,304.3	586,316	18,242,633	7,468,212	18,828,948		226.7	8,054,527		97.0
2002	10,470	770,032	22,062,528	8,558,731	22,832,561	21.3	218.1	9,328,764	15.8	89.1

주: 매출액(receipts)이란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gross receipt, sales, commissions, income received from trades and business 금액을 포함함.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WWW.census.gov/csd/susb/susb04.htm).

나. 중소기업의 범위

- 미국의 경우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는 없음.
- 기업 규모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것은 Small Business Act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소기업(small firm)의 정의서 비롯된다고 평가되고 있음.
 -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것'¹¹⁾
- Small Business Act에 의하면,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게 소

11) Small Business Act, "one which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and which is not dominant in its field of operation"

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규모 (size standards)와 범위(limits)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SBA는 기업 규모에 대하여 종업원 수와 매출액 규모의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제조업과 광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500명, 대부분의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매출액 650만달러를 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함.
- 구체적인 기준은 SBA의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13 CFR §121 또는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나타나 있으며 산업별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II-5〉 미국의 산업별 소기업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기업 기준
농·림·어·수렵업	농작물	매출액: 75만달러
	동물관련 제품	매출액: 200만달러(가축사육), 1,100만달러(달걀생산) 75만달러(그 외 16개)
	임업	종업원: 500인 미만(별목) 매출액: 650만달러(그 외 2개)
	어업	매출액: 400만달러
	농림업 지원	매출액: 650만달러, 예외적으로 산불진압과 연료관리는 1,650만달러
광업	유류 및 가스추출	종업원: 500인 미만
	채광(유류, 가스 제외)	종업원: 500인 미만
	채광 지원	매출액: 650만달러
전기·가스·수도		종업원: 500인(천연가스공급) 매출액: 1,150만달러(증기 및 공기조절 장치), 650만달러(급수 및 관개시설 외 1개)
건설업	건물 건설업	매출액: 3,100만달러
	토목시설물 건설업	매출액: 3,100만달러, 650만달러(토지 구획), 1,850만달러(준설 및 표면처리)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액: 1,300만달러

〈표 Ⅲ-5〉의 계속

제조업	음식료	종업원: 500인(제분업 외 38개 업종), 750인(사탕무 정제업 외 3개 업종), 1000인(시리얼제조업 외 2개 업종)
	음료 및 담배	종업원: 500인(무알콜음료 외 6개 업종), 750인(등류주), 1,000인(담배)
	섬유제품	종업원: 500인(방직업 외 8개 업종), 1,000인(직물 코팅 외 2개 업종)
	직물제품	종업원: 500인(카펫 및 러그 외 6개 업종), 1,000인(타이어코드)
	의복제품	종업원: 500인
	가죽제품	종업원: 500인(제혁 및 마감 외 8개 업종), 1,000인(고무·플라스틱신발류)
	목재제품	종업원: 500인
	종이제품	종업원: 500인(종이박스제조 외 13개 업종), 750인(펄프제조 외 5개 업종)
	인쇄	종업원: 500인
	석유 및 석탄제품	종업원: 500인(아스팔트포장 외 2개 업종), 750인(아스팔트자갈코팅재료), 1,500인(석유 정제)
	화학제품	종업원: 500인(인쇄잉크 외 15개 업종), 750인(플라스틱재료 외 6개 업종), 1,000인(석유화학제품 외 10개 업종)
	플라스틱·고무제품	종업원: 500인(플라스틱백 외 14개 업종), 750인(바닥포장제품), 1,000인(타이어제조)
	비금속광물제품	종업원: 500인(세라믹타일제조 외 15개 업종), 750인(시멘트제조 외 5개 업종), 1,000인(판유리제조 외 1개 업종)
	금속제조	종업원: 500인(주철공장 외 7개 업종), 750인(알루미늄 및 호일제조 외 9개 업종), 1,000인(알루미늄 정제 외 7개 업종)
	합성금속제품	종업원: 500인(금속용기제조 외 35개 업종), 750인(금속 열처리 외 2개 업종), 1,000인(금속캔제조 외 3개 업종)
	기계제품	종업원: 500인(농기계제조 외 42개 업종), 750인(건설장비제조 외 2개 업종), 1,000인(사무기계제조 외 2개 업종)
	컴퓨터 및 전자제품	종업원: 500인(축전지제조 외 17개 업종), 750인(오디오&비디오장치제조 외 5인), 1,000인(컴퓨터제조 외 5개 업종)
	전기제품 제조	종업원: 500인(주거용전등제조 외 7개 업종), 750인(가정용전기제품제조 외 6개 업종), 1,000인(전기램프전구제조 외 6개 업종)
	운송장치 제조	종업원: 500인(트럭트레일러 제조 외 8개 업종), 750인(가솔린엔진 및 엔진부품제조 외 6개 업종), 1,000인(자동차제조 외 12개 업종), 1500인(항공기 제조)
	가구 제조	종업원: 500인
기타 제조	종업원: 500인	

〈표 III-5〉의 계속

도매업		종업원: 100인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매출액: 650만달러(오토바이 판매 외 5개 업종), 900만달러(항공기 판매), 2,100만달러(중고차 판매), 2,600만달러(신차 판매)
	가구 등	매출액: 650만달러
	전기제품	매출액: 650만달러(카메라 등), 800만달러(가전제품)
	건축물자재 및 정원 설비	매출액: 650만달러
	식음료	매출액: 650만달러(육류 외 6개 업종), 2,500만달러(수퍼마켓 등)
	건강보조	매출액: 650만달러
	주유소	매출액: 800만달러(주유소), 3,500만달러(편의점 있는 주유소)
	의류	매출액: 650만달러(영유아 의류 외 4개 업종), 800만달러(남성의류 외 3개 업종)
	스포츠·취미·도서·음반	매출액: 650만달러
	일반상점	매출액: 1,050만달러(일반 상점), 2,500만달러(백화점 외 2개 업종)
	기타 소매상	매출액: 650만달러(회원 외 7개 업종), 1,200만달러(이동주택)
	비점포 소매상	매출액: 650만달러(자판기 외 3개 업종), 1,150만달러(heating oil), 2,300만달러(전자 쇼핑 외 2개 업종)
운송업	항공운송	종업원: 1,500명(정기편여객항공수송 외 3개 업종) 매출액: 2,550만달러(해안 항공), 650만달러(비정가표 항공수송)
	철도운송	종업원: 1,500명(터미널간 화물수송), 500명(단거리 철도수송)
	수로운송	종업원: 500명
	트럭운송	매출액: 2,350만달러
	육상여객운송	매출액: 650만달러
	파이프운송	종업원: 1,500명(크루드오일의 파이프라인 수송 외 1개 업종) 매출액: 650만달러(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수송), 3,150만달러(기타)
	관광운송	매출액: 650만달러
	운송 지원	매출액: 650만달러(항공교통통제 외 9개 업종), 2,350만달러(항공관리 외 3개 업종)
	우편	매출액: 650만달러
	소포송달업	종업원: 1,500명(couriers) 매출액: 2,350만달러(local messengers)
	창고업	매출액: 2,350만달러

〈표 Ⅲ-5〉의 계속

정보	출판	종업원: 500인(신문출판 외 5개 업종) 매출액: 2,300만달러(소프트웨어출판업)
	영화·음반	매출액: 650만달러(영화관 외 5개 업종), 2,700만달러(영화 및 비디오 제작 외 2개 업종) 종업원: 500인(음반 제작), 750인(통합녹음제작)
	방송	매출액: 650만달러(라디오방송국 외 1개 업종), 1,300만달러(TV방송국), 1,350만달러(케이블방송 등)
	인터넷 출판·방송	종업원: 500인
	통신	종업원: 1,500인(유선통신 외 3개 업종) 매출액: 1,350만달러(위성방송 외 3개 업종)
	인터넷서비스, 데이터처리	매출액: 650만달러(웹검색포털), 2,300만달러(인터넷서비스제공 외 1개 업종),
	기타	매출액: 650만달러(기사배급업 외 2개 업종)
금융	신용중개 등	자산: 1억 6,500만달러(은행 외 5개 업종) 매출액: 650만달러(2차금융 외 7개 업종)
	금융투자	매출액: 650만달러
	보험	매출액: 650만달러(생명보험 외 8개 업종) 종업원: 1,500명(권원보험)
	펀드, 신탁, 기타금융	매출액: 650만달러(연금펀드 외 6개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출액: 200만달러(부동산 중개사무소 외 4개 업종), 650만달러(거주용 건물의 임대 외 2개 업종), 1,900만달러(연방정부에 대한 리스), 2,300만달러(소규모창고 임대)
	임대·리스 서비스	매출액: 650만달러(가전제품 임대 외 9개 업종), 2,350만달러(자동차 임대 외 3개 업종)
	비금융무형자산 임대	매출액: 650만달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450만달러(건축서비스 외 4개 업종) 650만달러(변호사사무실 외 32개 업종), 1,100만달러(검사실험실), 1,700만달러(선박 및 조선공학) 2,300만달러(컴퓨터시스템설계 외 3개 업종), 2,500만달러(군사·우주 설비 외 1개 업종)	
기업 관리	매출액: 650만달러(은행지주회사 외 1개 업종)	
사업지원 및 폐기물 처리	사무지원	매출액: 350만달러(여행알선), 450만달러(카펫·가구 청소), 650만달러(사무실관리서비스 외 21개 업종), 1,150만달러(보안시스템 외 2개 업종), 1,500만달러(건물관리용역), 1,700만달러(경비·순찰 용역), 3,200만달러(설비지원 용역)
	폐기물처리	매출액: 650만달러(정화탱크 및 관련용역 외 1개 업종), 1,150만달러(고형폐기물수거 외 6개 업종), 1,300만달러(remediation services) 종업원: 500명(환경개선용역)
교육 서비스	매출액: 650만달러(초·중등학교 외 15개 업종), 2,350만달러(비행훈련), 3,250만달러(직업훈련)	

〈표 III-5〉의 계속

의료·복지	일시적 의료서비스	매출액: 650만달러(치과 외 7개 업종), 900만달러(내과 외 8개 업종), 1,250만달러(의료실험실 외 2개 업종), 3,150만달러(신장투석센터)
	병원	매출액: 3,150만달러
	간호	매출액: 650만달러(노인보호시설 외 2개 업종), 900만달러(정신지체자 시설), 1,250만달러(간호시설 외 1개 업종)
	사회복지	매출액: 650만달러
예술·문화·오락	공연예술	매출액: 650만달러
	박물관 등	매출액: 650만달러
	오락시설 등	매출액: 650만달러
숙박·음식업	숙박업	매출액: 650만달러
	음식업	매출액: 650만달러(식당 외 6개 업종), 1,900만달러(음식제공업)
기타 서비스업	수선·유지	매출액: 650만달러(자동차 수선 외 17개 업종), 2,300만달러(컴퓨터·사무기기 수선유지)
	인적·세탁 용역	매출액: 450만달러(세탁용역), 650만달러(이발소 외 12개 업종), 1,300만달러(린넨공급 외 1개 업종)
	종교단체 등	매출액: 650만달러

자료: SBA,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AICS code," 2007.7.31.

- 세법에서는 별도의 소기업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별 조세지원제도별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세법에서 소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 목표에 따라 소기업의 적용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제공함.
 - 일부 소기업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일부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왜곡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음.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 미국은 조세법에서 소기업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각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함.
 - 세법이 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소기업에게 유

리한 조항들이 세법에 산재되어 있음.

- 우대조항은 대부분 소득공제, 과세 제외 및 면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우대세율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모든 사업소득은 연방세(federal income tax)의 과세대상소득이지만 모든 사업소득이 연방세법상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님.
 - S법인, 파트너십 등의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음.
 - 법인의 순이익(net income)은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두 번 과세되는 반면, S법인(S-corporation),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파트너십과 같은 도관(pass through) 형태의 기업들의 순이익은 한번 과세됨.
 - C법인의 법인세율은 보통 35%의 법정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소득 1,000만달러 미만의 경우 법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소득의 과세는 법인 또는 도관의 소유자가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짐.
 - 최저한세(AMT)를 납부하는 법인이나 사업 소유자(business owner)는 일반 소득세(regular income tax)보다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 199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처음 과세연도를 포함한 3년 매출 평균이 500만달러 이하인 경우와 이후 평균매출이 750만달러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 사업용 상각자산을 구입한 경우 연간 11만 2,000달러(2007년)의 비용처리를 허용함.
 - 사업용 상각자산의 구입금액이 4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0가 됨.
 - 동 제도는 자산구입금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지원 효과가 없어지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음.

- 2004년 10월 이후 창업기업에 대해 적격 창업비용의 5,000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하지 못한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상각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다른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함.
 - 비법인 납세자가 QSBS(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판매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QSBS란 총 자산 5천만달러 이하의 적격한 C법인에 의해 1993년 이후 최초 발행한 주식을 말함.
 - 소기업투자회사(SBICs: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에 투자한 개인이 해당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상소득에서 공제함.
 - 소기업투자회사란 소기업투자법에 의해 인정된 비공개 C법인(과거 2년간 자산이 1,800만달러 미만이고 당기순이익이 600만달러 미만)을 말함.
 - 개인 및 법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판매대금을 60개월 이내에 SSBIC(Specialized SBIC)의 보통주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며, 이연가능한 금액 한도는 개인은 2만 5,000달러(부부합산은 5만달러), C법인은 25만달러 정도임.
 - 개인이 소기업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통상손실로서 공제하며 최대 금액은 5만달러(부부합산인 경우 10만달러)임.
 - 적용대상 소기업은 출자자본이 100만달러 미만인 법인임.
- 기타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과거 총 매출 평균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을 허용함.
 - 전년도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종업원을 위한 새로운 퇴직연금을 설계하는 경우 적격비용 1,000달러의 50%를 세액 공제함.

2. 영국

가. 중소기업 현황¹²⁾

□ 영국 무역산업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영국의 중소기업은 430만개로 집계되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8%이며, 이 중 소기업의 비중은 99.2%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9.3~100%로 산업별 비중이 고르게 분포함.

〈표 Ⅲ-6〉 영국 중소기업의 규모별·산업별 기업체 수

(단위: 개,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기업체 수	구성비	기업체 수	구성비	기업체 수	구성비
농업·수렵업·임업·어업	164,930	100.0	164,760	99.9	164,945	100.0
광업	9,035	99.3	8,930	98.2	9,100	100.0
제조업	330,365	99.5	323,070	97.3	332,130	100.0
건설업	923,470	100.0	921,620	99.8	923,770	100.0
도매업·소매업·수리업	576,000	99.8	571,515	99.1	577,050	100.0
숙박업·요식업	151,845	99.8	149,930	98.6	152,160	100.0
운수업·창고업·통신업	262,010	99.8	260,555	99.2	262,470	100.0
금융업	66,415	99.5	65,725	98.5	66,725	100.0
부동산업·임대업·사업서비스업	1,030,005	99.8	1,024,960	99.3	1,031,135	100.0
교육서비스업	126,630	100.0	126,195	99.7	126,730	100.0
보건·사회복지사업	243,625	100.0	241,530	99.1	243,815	100.0
기타 사회·개인서비스업	451,755	100.0	450,725	99.8	452,015	100.0
산업 전체	4,336,075	99.8	4,309,505	99.2	4,342,045	100.0

- 주: 1.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소유주와 파트너를 제외) 250인 미만의 기업을 지칭
 2. '소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함.
 3.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공기업과 국영단체를 제외)를 대상으로 함.
 4. 종업원이 없는 1인 기업들(with no employees)을 포함.
 5. 2005년 기준임.

자료: DTI, *SMS Statistics 2005*.

12) 영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는 종업원수 250인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2005년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1,300만명으로 집계됨.
 - 규모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종업원의 비율이 58.7%인데, 이 중소기업 종업원의 비율이 46.8%임.
 - 산업별로 보면 종업원 수 분포에 편차가 있는데, 광업, 금융업은 20% 전후로서 중소기업의 종업원 비중이 낮은 반면, 농업·수렵업·임업·어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97.4%로 가장 높음.

〈표 III-7〉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천명,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농업·수렵업·임업·어업*	406	97.4	391	93.8	471	100.0
광업*	28	17.3	18	11.1	162	100.0
제조업	1,884	54.2	1,137	32.7	3,476	100.0
건설업	1,658	83.1	1,482	74.2	1,995	100.0
도매업·소매업·수리업	2,275	47.2	1,842	38.2	4,825	100.0
숙박업, 요식업	922	57.1	738	45.7	1,614	100.0
운수업·창고업·통신업	669	39.8	526	31.2	1,681	100.0
금융업	233	21.4	162	14.9	1,091	100.0
부동산업·임대업·사업서비스업	2,787	68.5	2,270	55.8	4,065	100.0
교육서비스업	268	76.8	223	64.0	349	100.0
보건·사회복지사업	936	78.6	752	63.1	1,191	100.0
기타 단체·사회·개인서비스업	923	72.9	821	64.8	1,265	100.0
산업전체	12,990	58.7	10,361	46.8	22,131	100.0

- 주: 1. 여기에서 '종업원'은 소유주와 파트너를 포함
 2. *는 추정치
 3.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소유주와 파트너를 제외) 250인 미만의 기업을 지칭
 4. '소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함
 5.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공기업과 국영단체를 제외)를 대상으로 함
 6. 종업원이 없는 1인 기업들을 포함
 7. 2005년 기준임.

자료: DTI, SMS Statistics 2005.

- 2005년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액(매출액)규모는 1조 2,498억파운드로 나타남.
 - 규모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51.0%이며, 소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36.4%를 차지함.

- 산업별로 보면, 광업, 제조업, 운수업·창고업·통신업에서 중소기업의 매출액(생산액) 비중이 40%대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보임.

〈표 Ⅲ-8〉 영국 중소기업의 규모별·산업별 매출액(생산액) 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

산업	중소기업		소기업		전체기업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농업·수렵업·임업·어업*	27,216	96.1	25,204	89.0	28,317	100.0
광업*	10,888	13.6	4,988	6.3	80,376	100.0
제조업	169,490	35.5	85,821	18.0	477,393	100.0
건설업	139,757	66.2	116,476	55.2	211,012	100.0
도매업·소매업·수리업	427,120	50.4	292,536	34.5	846,494	100.0
숙박업·요식업	37,641	57.5	30,112	45.9	65,453	100.0
운수업·창고업·통신업	75,265	37.1	51,169	25.3	202,818	100.0
금융업**	n.a.	n.a.	n.a.	n.a.	n.a.	100.0
부동산업·임대업·사업서비스업	253,498	70.4	198,407	55.2	360,177	100.0
교육서비스업	10,818	81.2	8,829	66.3	13,327	100.0
보건·사회복지사업	41,983	86.7	33,165	68.4	48,401	100.0
기타 단체·사회·개인서비스업	53,272	46.8	44,834	39.4	113,876	100.0
산업전체	1,249,788	51.0	891,542	36.4	2,447,644	100.0

- 주: 1.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소유주와 파트너를 제외) 250인 미만의 기업을 지칭
- 2. *는 추정치
- 3. **는 비교가능한 자료가 없음
- 4. '소기업'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함
- 5.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공기업과 국영단체를 제외)를 대상으로 함
- 6. 종업원이 없는 1인 기업들(with no employees)을 포함
- 7. 2005년 기준임.

자료: DTI, *SMS Statistics* 2005.

□ GDP 대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 영국의 GDP와 중소기업 매출액은 〈표 Ⅲ-9〉와 같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2004년 대비 2005년 증가율을 보면 GDP는 4.2%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 매출액은 3.6%증가하여 GDP 증가율보다 낮음.

- GDP 대비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1995년 1.3배, 2000년 1.1배, 2005년 1.0배로 중소기업 매출액 성장이 상대적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고 있음.

〈표 III-9〉 매출액 증가율 및 GDP 비중

(단위: 백만파운드, %)

	1995	2000	2004	2005	
				금액	2004년 대비 증가율
GDP	723,080	958,931	1,184,296	1,233,976	4.2
중소기업 매출액	947,048	1,039,559	1,206,150	1,249,788	3.6
GDP 대비 매출액 비중	130.9	108.4	101.8	101.2	-0.6

주: 중소기업 매출액은 전산업을 기준으로 함.
 자료: DTI, *SMS Statistics*, 각 연도.
 National Statistics, *The Blue Book 2007*.

나.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소기업법적 성격의 법률은 없음.
 - 무역산업국(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DTI) 통계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SMSs)을 종업원 25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에는 다음과 같이 매출액(turnover)과 대차대조표 정보도 고려함.

〈표 III-10〉 영국의 중소기업 판정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분류	매출액(Turnover)	자산총액(Balance Sheet Total)	종업원수
소기업	5.6 미만	2.8 미만	50인 미만
소그룹	순매출액 5.6 미만 또는 총매출액 6.72 미만	자본규모 2.8 미만 또는 자산규모 3.36 미만	
중기업	22.8 미만	11.40 미만	250인 미만
중그룹	순매출액 22.8 미만 또는 총매출액 27.36 미만	자본규모 11.40 미만 또는 자산규모 13.68 미만	

자료: 영국 무역산업국 인터넷자료(<http://www.dti.gov.uk/bbf/financial-reporting/acc-audit-developments/page16361.html>).

□ 개별법상 중소기업 정의에 관한 규정

○ 1985년 회사법상 회계감사 면제 조항

- 외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는 외부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표 Ⅲ-10>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외부감사 신청을 배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정의

○ 유럽연합은 EU라는 단일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정의규정을 채택함.

- 1996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의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
- 2003년 5월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의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을 채택(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

<표 Ⅲ-11> 유럽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규정

분류	매출액 (Annual turnover)	자산총액 (Annual balance sheet total)	종업원수 (Staff headcount)
초소기업	2백만유로 이하	2백만유로 미만	10인 이하
소기업	10백만유로 이하	10백만유로 미만	50인 이하
중기업	50백만유로 이하	43백만유로 미만	250인 이하

자료: 유럽위원회, Recommendation 2003/361/EC.

○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가입국에서 수용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님.

- 그러나 유럽위원회,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은 동 권고안을 적용함.

○ 판정기준 해설

- 종업원은 전일제, 파트타임, 계절별 근로자를 말하는데, 소유경영자(owner-manager)와 중소기업에서 정규적인 활동을 하는 파트너를 포함.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나 다른 간접세들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자산총액의 구체적 항목은 유럽위원회 지침(Directive) 78/660/EEC 제12조 3호 참조.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 영국은 조세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각 조세지원별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함.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구입할 경우 공구 및 기계류 구입비용에 공제율(소기업:50%, 중기업:40%)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taxable profit)에서 공제(First-year allowances : FYAs)¹³⁾함.
 - 중기업과 소기업은 연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중기업(Medium Business)은 연매출액(Annual turnover) 1,120만파운드 이하, 자산총액(Assets) 560만파운드 이하, 종업원 수 250인 이하 중 두 가지에 해당해야 함.
 - 소기업(Small Business)은 연매출액(Annual turnover) 280만파운드 이하, 자산총액(Assets) 140만파운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 중 두 가지에 해당해야 함.
-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공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지원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R&D비용의 150%를 공제¹⁴⁾(대기업은 125%)하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오직 중소기업만 R&D비용의 일부에 대해 현금

13) 2008년 4월부터 첫해연도 공제(FYAs)는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첫 £50,000 투자금액에 대한 연간 투자 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로 변경 예정

14) 2008/2009년에는 주정부의 지원승인이 있으면 175%를 공제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

으로 연구개발장려금(payabl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때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동일한데, 종업원수는 250인 이하이고, 연매출액이 500만파운드 이하이거나 대차대조표 합계가 4,30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함.

□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유형의 비상장 소규모회사(small company)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함.

- 투자부분에 20% 소득세율을 적용(저율과세)하거나,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 또는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을 해줌.

- 소규모의 고위험 비상장회사(small higher-risk unquoted trading companies)의 요건으로 다른 회사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비상장회사이며 투자 이전에 자산총액(gross assets)이 700만파운드 미만이고 투자 이후에도 자산총액이 800만파운드 미만이어야 함.(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VCM20500)

□ 과세소득(profit)이 150만파운드 미만인 회사는 경감된 법인세율이 적용됨.

□ 소기업은 개별 매입매출건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할 필요가 없고, 차년도 연간매출액에 영역별 단일세율(flat rate)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한 첫 해에는 해당 단일세율에서 1%를 감면함.

- 소기업(small business)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 차년도 연간매출액 15만파운드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차년도 연간사업소득 18.75만파운드 미만이어야 함.

3. 일본

가. 중소기업 현황

□ 1차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 2001, 2004년 기간에 99.7%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사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이 전체 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낮고 부동산업과 복합서비스사업은 100%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2〉 산업별·규모별 기업 수

(단위: 개, %)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기업수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광업	1999	3,074	99.8	2,633	85.5	5	0.2	3,079
	2001	2,618	99.7	2,276	86.6	9	0.3	2,627
	2004	2,306	99.8	2,027	87.7	5	0.2	2,311
건설업	1999	555,372	99.9	526,027	94.6	475	0.1	555,847
	2001	543,397	99.9	516,405	95.0	363	0.1	543,760
	2004	507,086	99.9	484,828	95.6	319	0.1	507,405
제조업	1999	599,512	99.6	532,691	88.5	2,382	0.4	601,894
	2001	548,830	99.6	489,306	88.8	2,121	0.4	550,951
	2004	489,115	99.6	433,917	88.4	1,941	0.4	491,056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999	521	95.2	274	50.1	26	4.8	547
	2001	510	94.8	266	49.4	28	5.2	538
	2004	490	94.6	262	50.6	28	5.4	518
정보통신업	1999	26,314	96.3	15,566	57.0	1,014	3.7	27,328
	2001	32,240	96.8	19,486	58.5	1,070	3.2	33,310
	2004	30,815	96.5	18,358	57.5	1,129	3.5	31,944
운수업	1999	91,918	99.6	71,969	78.0	328	0.4	92,246
	2001	86,046	99.7	66,999	77.6	281	0.3	86,327
	2004	80,479	99.7	62,345	77.2	262	0.3	80,741
도매, 소매업	1999	1,378,112	99.6	1,148,472	83.0	6,043	0.4	1,384,155
	2001	1,309,984	99.5	1,092,042	83.0	5,938	0.5	1,315,922
	2004	1,160,469	99.6	958,117	82.2	4,789	0.4	1,165,258

〈표 Ⅲ-12〉의 계속

(단위: 개, %)

	도매업	1999	293,903	99.2	203,261	68.6	2,259	0.8	296,162
		2001	255,587	99.1	176,374	68.4	2,394	0.9	257,981
		2004	252,390	99.2	176,360	69.3	2,130	0.8	254,520
	소매업	1999	1,084,209	99.7	945,211	86.9	3,784	0.3	1,087,993
		2001	1,054,397	99.7	915,668	86.6	3,544	0.3	1,057,941
		2004	908,079	99.7	781,757	85.8	2,659	0.3	910,738
금융, 보험업	1999	33,118	98.9	31,842	95.1	363	1.1	33,481	
	2001	34,281	99.1	33,126	95.8	313	0.9	34,594	
	2004	30,192	99.1	29,120	95.6	283	0.9	30,475	
부동산업	1999	294,976	100.0	291,309	98.7	102	0.0	295,078	
	2001	297,082	100.0	293,782	98.9	94	0.0	297,176	
	2004	287,005	100.0	283,704	98.8	91	0.0	287,096	
음식업, 숙박업	1999	772,760	99.9	683,485	88.3	1,158	0.1	773,918	
	2001	742,710	99.9	655,641	88.2	914	0.1	743,624	
	2004	677,390	99.9	597,980	88.2	870	0.1	678,260	
의료, 복지	1999	169,588	99.8	132,772	78.2	275	0.2	169,863	
	2001	175,542	99.9	134,995	76.8	261	0.1	175,803	
	2004	178,912	100.0	136,098	76.0	80	0.0	178,992	
교육, 학습지원업	1999	115,764	99.9	105,171	90.7	154	0.1	115,918	
	2001	119,100	99.9	108,115	90.7	122	0.1	119,222	
	2004	114,722	99.9	104,167	90.7	121	0.1	114,843	
복합서비스사업	1999	3,590	100.0	3,588	99.9	0	0.0	3,590	
	2001	3,960	100.0	3,957	99.9	0	0.0	3,960	
	2004	3,588	100.0	3,587	100.0	0	0.0	3,588	
기타서비스업	1999	792,144	99.7	682,982	86.0	2,016	0.3	794,160	
	2001	793,308	99.8	685,773	86.2	1,917	0.2	795,225	
	2004	763,773	99.8	662,353	86.5	1,875	0.2	765,648	
비1차산업 계	1999	4,836,763	99.7	4,228,781	87.2	14,341	0.3	4,851,104	
	2001	4,689,608	99.7	4,102,169	87.2	13,431	0.3	4,703,039	
	2004	4,326,342	99.7	3,776,863	87.1	11,793	0.3	4,338,135	

- 주: 1. 기업 수 = 회사 수 + 개인사업소(단독사업소 및 본소·본사·본점사업소)
 2. 중소기업법의 정의에 따라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도매업,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은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도매업은 1억엔 이하,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000만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3. 상시종업원 20인 이하(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인 기업을 소규모기업이라 함.
 4. 소규모기업의 구성비는 전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5. 산업분류는 2002년 3월 개정된 것을 따름. 1999년 및 2001년은 구 분류의 산업 소분류를 신 분류의 산업소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음.
-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05.

○ 또한 일본에서는 상시 종업원 20인(또는 5인)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7% 정도임.

□ 1차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종업원 수는 조사대상 기간인 1999년, 2001년, 2004년에 각각 44.7%, 44.4%, 44.3%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으나 중소기업 종업원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대기업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업원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광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이며, 전체 보다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은 정보통신업과 의료·복지업임.

〈표 Ⅲ-13〉 산업별·규모별 종업원 수

(단위: 명, %)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광업	1999	51,787	48.5	27,636	25.9	54,934	51.5	106,721
	2001	44,262	48.5	25,427	27.8	47,057	51.5	91,319
	2004	36,101	49.0	21,912	29.8	37,549	51.0	73,650
건설업	1999	4,875,254	48.9	3,005,959	30.2	5,089,500	51.1	9,964,754
	2001	4,778,737	49.2	3,024,411	31.1	4,943,611	50.8	9,722,348
	2004	4,240,384	49.2	2,764,947	32.1	4,382,413	50.8	8,622,797
제조업	1999	8,425,330	42.8	3,083,844	15.6	11,280,992	57.2	19,706,322
	2001	8,137,677	42.6	2,964,485	15.5	10,956,750	57.4	19,094,427
	2004	7,455,508	42.9	2,629,993	15.1	9,940,449	57.1	17,395,957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999	153,713	41.7	14,746	4.0	214,550	58.3	368,263
	2001	148,979	41.6	14,473	4.0	209,393	58.4	358,372
	2004	126,933	40.2	13,013	4.1	188,914	59.8	315,847
정보통신업	1999	664,484	35.2	106,801	5.7	1,223,956	64.8	1,888,440
	2001	774,407	35.4	142,895	6.5	1,411,236	64.6	2,185,643
	2004	740,757	34.9	129,919	6.1	1,382,316	65.1	2,123,073
운수업	1999	2,640,685	47.5	607,141	10.9	2,916,569	52.5	5,557,254
	2001	2,650,382	47.6	609,310	10.9	2,923,138	52.4	5,573,520
	2004	2,544,003	47.4	578,465	10.8	2,822,174	52.6	5,366,177
도매, 소매업	1999	10,740,633	44.9	3,229,831	13.5	13,175,361	55.1	23,915,994
	2001	10,587,887	44.4	3,202,982	13.4	13,278,573	55.6	23,866,460
	2004	9,747,677	44.4	2,845,464	13.0	12,218,819	55.6	21,966,496
도매업	1999	3,944,553	45.3	701,803	8.1	4,758,582	54.7	8,703,135
	2001	3,559,465	45.2	643,366	8.2	4,311,447	54.8	7,870,912
	2004	3,338,697	45.5	624,883	8.5	3,999,420	54.5	7,338,117
소매업	1999	6,796,080	44.7	2,528,028	16.6	8,416,779	55.3	15,212,859
	2001	7,028,422	43.9	2,559,616	16.0	8,967,126	56.1	15,995,548
	2004	6,408,980	43.8	2,220,581	15.2	8,219,399	56.2	14,628,379

〈표 Ⅲ-13〉의 계속

(단위: 명, %)

	연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대기업		합계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금융, 보험업	1999	1,491,079	46.4	556,030	17.3	1,723,382	53.6	3,214,461
	2001	1,391,465	45.8	548,181	18.1	1,644,664	54.2	3,036,129
	2004	1,201,074	45.6	469,052	17.8	1,431,140	54.4	2,632,214
부동산업	1999	917,277	49.1	714,755	38.3	949,576	50.9	1,866,853
	2001	962,574	49.1	761,033	38.8	998,042	50.9	1,960,616
	2004	929,534	49.0	725,871	38.3	965,827	51.0	1,895,361
음식업, 숙박업	1999	4,360,996	47.0	1,608,029	17.3	4,917,099	53.0	9,278,095
	2001	4,586,932	47.3	1,573,881	16.2	5,107,737	52.7	9,694,669
	2004	4,365,775	47.5	1,427,037	15.5	4,816,722	52.5	9,182,497
의료, 복지	1999	2,060,994	39.0	345,809	6.6	3,217,036	61.0	5,278,030
	2001	2,359,179	39.5	361,838	6.1	3,611,476	60.5	5,970,655
	2004	2,719,112	39.5	368,181	5.4	4,156,236	60.5	6,875,348
교육, 학습지원업	1999	939,351	42.9	207,226	9.5	1,250,269	57.1	2,189,620
	2001	997,008	43.2	222,789	9.6	1,312,624	56.8	2,309,632
	2004	1,027,798	42.9	219,074	9.1	1,367,742	57.1	2,395,540
복합서비스사업	1999	303,625	44.0	46,401	6.7	386,376	56.0	690,001
	2001	312,603	43.8	46,864	6.6	401,828	56.2	714,431
	2004	278,431	43.9	41,212	6.5	355,781	56.1	634,212
기타서비스업	1999	5,662,373	44.1	1,865,158	14.5	7,190,713	55.9	12,853,086
	2001	5,972,172	43.3	1,955,353	14.2	7,834,462	56.7	13,806,634
	2004	5,763,217	42.6	1,880,993	13.9	7,779,098	57.4	13,542,315
비차산업 계	1999	43,287,581	44.7	15,419,366	15.9	53,590,313	55.3	96,877,894
	2001	43,704,264	44.4	15,453,922	15.7	54,680,591	55.6	98,384,855
	2004	41,176,304	44.3	14,115,133	15.2	51,845,180	55.7	93,021,484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05.

-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5~2006년 기간에 각각 전년대비 3.4%,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2005년에 정보통신업과 부동산업이 34.3%와 17.0%로 큰 증가율을 보이나 2006년에는 정보통신업은 오히려 18.1% 감소하고 부동산업은 0.2%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매출액 상위를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업, 제조업, 소매업 순임.

〈표 III-14〉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

	연도	매출액			산업별 비중	증감률
		법인기업	개인기업	계		
전 산업	2004	510,291,460	42,867,833	553,159,292	100.0	
	2005	493,779,047	40,686,437	534,465,484	100.0	-3.4
	2006	479,494,290	39,756,799	519,251,089	100.0	-2.8
건설업	2004	76,372,990	4,221,194	80,594,184	14.6	
	2005	81,445,511	4,768,270	86,213,781	16.1	7.0
	2006	74,710,204	4,819,523	79,529,727	15.3	-7.8
제조업	2004	119,466,966	3,522,124	122,989,090	22.2	
	2005	124,614,381	3,302,843	127,917,224	23.9	4.0
	2006	113,298,800	2,945,684	116,244,484	22.4	-9.1
정보통신업	2004	8,949,974	51,864	9,001,838	1.6	
	2005	12,043,467	49,576	12,093,043	2.3	34.3
	2006	9,864,122	39,564	9,903,686	1.9	-18.1
운수업	2004	22,485,732	239,519	22,725,251	4.1	
	2005	21,273,960	281,118	21,555,078	4.0	-5.1
	2006	21,063,789	264,142	21,327,931	4.1	-1.1
도매업	2004	151,835,745	2,407,336	154,243,081	27.9	
	2005	128,904,294	2,542,619	131,446,913	24.6	-14.8
	2006	134,055,381	2,502,680	136,558,061	26.3	3.9
소매업	2004	57,149,238	14,124,863	71,274,101	12.9	
	2005	52,648,376	13,724,265	66,372,641	12.4	-6.9
	2006	52,301,581	13,409,238	65,710,819	12.7	-1.0
부동산업	2004	14,146,557	2,044,978	16,191,535	2.9	
	2005	16,807,432	2,139,382	18,946,814	3.5	17.0
	2006	16,876,129	2,099,748	18,975,877	3.7	0.2
음식숙박업	2004	8,868,339	8,051,299	16,919,638	3.1	
	2005	8,890,380	6,883,481	15,773,861	3.0	-6.8
	2006	9,895,754	6,525,046	16,420,800	3.2	4.1
서비스업	2004	51,015,919	8,204,656	59,220,575	10.7	
	2005	47,151,247	6,994,883	54,146,130	10.1	-8.6
	2006	47,428,529	7,151,174	54,579,703	10.5	0.8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 2004~2006년 기간 중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GDP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을 산출하였음.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 111.5%에서 2005년에 106.4%로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경제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Ⅲ-15〉 중소기업 매출액의 GDP 비중

(단위: 10억엔, 백만엔, %)

	GDP	매출액			매출액 GDP비중
		계	법인기업	개인기업	
2004	496,058	553,159,292	510,291,460	42,867,833	111.5
2005	502,457	534,465,484	493,779,047	40,686,437	106.4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나. 중소기업의 범위

- 일본은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관하여 기본이념, 기본방침 등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법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⁵⁾.
-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¹⁶⁾.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15) 중소기업법 제1조

16) 중소기업법 제2조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을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 자본금 및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표 Ⅲ-16〉 중소기업 근거법 및 기준

근거법	업종	기준
중소기업법 제2조	제조업 등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300인 이하
	도매업	자본금 1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소매업	자본금 5천만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
	서비스업	자본금 5천만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소규모기업공제법 제2조	공업, 광업, 운송업 등	종업원 수 20인 이하 개인
	상업 또는 서비스업	종업원 수 5인 이하 개인
법인세법 제66조	-	자본금 1억엔 이하

- 「소규모기업공제법」에서는 소규모기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¹⁷⁾.
 - 평상시 사용한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의 개인이고, 공업, 광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상업, 서비스업 제외)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한 것
 - 평상시 사용한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의 개인이고, 상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한 것

-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인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경감세율을 적용함.
 - 자본금 1억엔이 넘는 법인에게는 30%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에게는 과세소득 800만엔까지는 22%, 800만엔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17) 소규모공제법 제2조

30%를 적용함¹⁸⁾.

〈표 Ⅲ-17〉 법인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세율

구 분		과세구간	세율
보통 법인	대법인(자본금 1억엔 초과)	-	30%
	중소법인(자본금 1억엔 이하)	연소득 800만엔 초과부분	30%
		연소득 800만엔 이하 부분	22%

- 일본은 1947년 신고납부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950년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음.
 - 청색신고를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을 청색신고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청색신고를 하여야 함.
 - 청색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 또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일까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색신고승인을 취소함.
 - 그해 사업연도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이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비치한 장부서류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기재하여 부실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 청색신고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색신고 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8) 법인세법 제66조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 일본은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대체로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자본금 1억엔 이하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인재투자촉진세제로 대기업의 경우 교육훈련비 증가액의 25%를 세액공제하지만 중소기업은 총액의 20%를 세액공제함.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800만엔까지 22%의 저율과세함.
 - 투자 촉진을 위해 기계·장치 1대의 취득가액이 160만엔 이상인 것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이 280만엔 이상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을 허용함.
 - 취득가액 30만엔 미만의 소액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자기자본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등의 경우 동족회사유보금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정보기반 시설을 취득 또는 리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에 대해 취득가액의 10% 세액공제 또 50% 특별상각 허용함.
 - 특별시험연구비의 경우 대기업은 5~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시험연구비 매출액 비중이 3%를 초과하거나 매출 증가율이 25%를 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세지원함.

- 투자자에 대해 주식양도차익에서 특정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공제함.
-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0%만을 주식양도차익으로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4. 대 만

가. 중소기업 현황

- 대만 중소기업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6.3~9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종업원에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78.3%로 중소기업이 고용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표 Ⅲ-18〉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단위: 개, 천명, %)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1994	969,094	n.a.	932,852	n.a.	96.3	n.a.
1995	1,012,212	n.a.	991,615	n.a.	98.0	n.a.
1996	1,024,360	n.a.	1,003,325	n.a.	98.0	n.a.
1997	1,043,286	n.a.	1,020,435	n.a.	97.8	n.a.
1998	1,069,116	n.a.	1,045,117	n.a.	97.8	n.a.
1999	1,085,430	9,385	1,060,738	7,344	97.7	78.3
2000	1,091,245	9,491	1,070,310	7,410	98.1	78.1
2001	1,098,185	9,383	1,078,162	7,288	98.2	77.7
2002	1,130,525	9,454	1,104,706	7,361	97.7	77.9
2003	1,172,633	9,573	1,147,200	7,425	97.8	77.6
2004	1,204,343	9,786	1,176,986	7,553	97.7	77.2
2005	1,253,694	9,942	1,226,095	7,648	97.8	76.9

주: 1. 1995년 11월 이후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NT\$6천만 미만 또는 전년도 영업총수익 NT\$8천만 미만인 기업임.

2. 2000년 5월 이후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NT\$8천만 미만 또는 전년도 영업총수익 1억NT\$ 미만인 기업임.

자료: 대만 중소기업체, 『중소기업백서』, 각 연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증가율을 살펴보면, 특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2000년~2005년까지 연평균 중소기업 증가율은 2.9%로 동일기간 연평균 전체 사업체 증가율과 거의 동일.
-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은 120만개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산업에서 96.3~9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만, 수도·전기·가스업과 금융업·보험업은 78.6%, 82.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표 III-19〉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중소기업		전체기업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농업·임업·어업	11,099	99.7	11,135	100.0
광업·토석채취업	1,410	98.5	1,431	100.0
제조업	134,172	96.9	138,519	100.0
수도·전기·가스업	522	78.6	664	100.0
건설업	86,001	98.4	87,398	100.0
도매업·소매업	651,590	97.8	666,418	100.0
숙박업·음식업	102,096	99.8	102,347	100.0
운수업·통신업	36,898	96.5	38,227	100.0
금융업·보험업	11,263	82.6	13,630	100.0
부동산업·임대업	25,827	96.3	26,830	100.0
과학기술서비스업	46,352	97.9	47,352	100.0
교육서비스업	430	98.4	437	100.0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75	98.9	379	100.0
문화·운동·여가서비스업	28,779	98.7	29,146	100.0
기타서비스업	89,281	99.4	89,781	100.0
산업 전체	1,226,095	97.8	1,253,694	100.0

주: 2005년 기준임.
 자료: 대만 중소기업처, 『중소기업백서 2006』, 2006.

- 부문별 종업원 수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는 760만명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서비스업이 418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각 부문별 전체 종업원에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98.8%, 공업 80.9%, 서비스업 72.3%로 농업부문의 중소기업 종업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표 Ⅲ-20〉 부문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천명, %)

분 류	중소기업		전체기업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농업	584	98.8	591	100.0
공업	2,877	80.9	3,558	100.0
서비스업	4,187	72.3	5,793	100.0
산업전체	7,648	76.9	9,942	100.0

주: 1. 농업은 농업·임업·어업·목축업을 포함. 공업은 광업, 토석채취업, 제조업, 수도·전기·가스업, 건설업을 포함. 서비스업은 도매업·소매업, 숙박업·음식업, 운수업·창고업·통신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운동·여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2. 2005년 기준임.

자료: 대만 중소기업처, 『중소기업백서 2006』, 2006.

- 〈표 Ⅲ-21〉의 산업별 생산액(매출액) 현황을 보면, 산업별 생산액(매출액)은 산업 전체에서 29.5%에 불과하여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액(매출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광업·토석채취업, 숙박업·음식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이 생산액(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도업·전기업·가스업, 금융업·보험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영향은 1.5%, 4.1%로 매우 낮음.
 - 수도·전기·가스업과 금융·보험업은 중소기업 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를 감안하여도 생산액(매출액)규모는 매우 저조하여

실질적인 생산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짐.

〈표 III-21〉 산업별 생산액(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NT\$, %)

산업분류	중소기업		전체기업	
	생산액(매출액)	구성비	생산액(매출액)	구성비
농업·임업·어업	14,252	42.3	33,679	100.0
광업·토석채취업	43,591	84.4	51,628	100.0
제조업	3,675,142	32.8	11,193,576	100.0
수도업·전기업·가스업	7,724	1.5	526,787	100.0
건설업	1,093,934	63.7	1,718,327	100.0
도매업·소매업	3,795,076	30.8	12,304,550	100.0
숙박업·음식업	206,783	68.4	302,529	100.0
운수업·통신업	307,469	22.4	1,371,514	100.0
금융업·보험업	172,332	4.1	4,159,047	100.0
부동산업·임대업	157,060	23.5	668,110	100.0
과학기술서비스업	238,978	27.5	869,433	100.0
교육서비스업	1,757	45.5	3,865	100.0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64	60.2	2,101	100.0
문화·운동·여가서비스업	81,880	30.6	267,524	100.0
기타서비스업	202,979	43.3	469,185	100.0
산업전체	10,000,220	29.5	33,941,857	100.0

주: 2005년 기준임.
자료: 대만 중소기업처, 『중소기업백서』, 2006.

나.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인정표준(中小企業認定標準)」¹⁹⁾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²⁰⁾,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

19) 1991년 10월에 行政院에서 발표함.

20) 중소기업인정표준 제2조.

〈표 Ⅲ-22〉 대만의 중소기업 기준

산업분류	중소기업		초소기업
	기 본	예 외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	납입자본금 < NT\$8천만	종업원 수 < 200인	종업원 수 < 20인
상업, 서비스업 등	전년도 영업총수익 < NT\$1억	종업원 수 < 50인	종업원 수 < 5인

□ 원칙적으로 산업분류에 따라 납입자본금 또는 전년도 영업총수익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만, 정부기관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개별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상시종업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에 기초할 수 있음.

○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

- 원칙: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이 NT\$8천만²¹⁾ 미만
- 예외: 종업원 수 200인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수도·전기·가스, 상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공상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 원칙: 전년도 영업총수익(sales revenue)이 NT\$1억 미만
- 예외: 종업원 수 50인 미만

○ 초소기업(微型企業)²²⁾

-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 : 종업원 수 20인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수도·전기·가스, 상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공상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 종업원 수 5인 미만

○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 여부 판정시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각 지원제도에 따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종업원 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1) NT\$란 New Taiwan Dollar의 약자이며, 현행 대만의 화폐 명칭임. 중국어로는 「圓」으로 표기함.

22) 중소기업인정표준 제3조.

- 지원 결과 중소기업자의 범위 초과시 지원 후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지원으로 합병된 기업이 중소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합병 후 2년간은 중소기업자로 간주함.
 - 합병한 날로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자로 간주함.

-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중소기업발전법에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발전법상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 또는 회사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다.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 대만은 조세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판단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정표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정의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인정표준(中小企業認定標準)의 중소기업 정의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회사등록을 한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함(중소기업발전법 제2조).
 - 중소기업의 정의기준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은 납입자본금으로 기준으로 분류하는 한편, 상업, 서비스업 등 기타 산업은 전년도 영업총수익을 기준으로 분류함(〈표 Ⅲ-22〉 참조).

- 대만의 중소기업발전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가 공업구에서 중소기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중소기업의 자가사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 해당 주식은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고,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는 그 토지투자를 한 연도부터 5년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공장을 공업구 등으로 옮기면서 원래의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이전시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증치세는 최저과세구간의 세율로 징수함.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은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연구발전·실험 또는 품질검사용에 제공되는 기기설비는 그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것은 내용연수를 1/2로 단축해서 감가상각함.

-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음.
- 중소기업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투자총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에 충당함.

IV.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대만의 중소기업의 일반적 범위 및 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 각 나라의 중소기업법 및 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각 지원단계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하고자 함.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대만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과 유사한 별도의 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이 있음.
 - 양적 기준은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²³⁾,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²⁴⁾을 고려함.
 - 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도 기본법에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양적 기준은 대부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임.
 -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자본금 대신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규모를 매출액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산업세분류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질적 기준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될 것과 더불어 ‘해당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독립성만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24) 기타산업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中小企業基本法」에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금 대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모든 업종에서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본 또는 전년도 영업총수익을 기준으로 하나 개별지침이 제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종업원 수를 고려함.

- 영국은 중소기업법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EU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종업원 수와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고려함.
 - 우리나라나 일본이 종업원 수 기준과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데 반해 영국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또한 비교대상국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업종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임.

〈표 IV-1〉 중소기업 범위의 양적 기준¹⁾ 비교

	우리나라	미국	영국 ⁶⁾	일본	대만
제조업	종업원:300인 미만/ 자본금:80억원 이하	종업원: 500인 ²⁾	종업원수: 250 인 이하 &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자산 4,300만 유로 미만	종업원: 300인 이하/ 자본금: 3억엔 이하	자본금: 8천만 NT\$ 미만
도매업	종업원:100인 이하/ 매출액:100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억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NT\$ 미만
소매업	종업원:300인 미만/ 매출액:300억원 이하	매출액: 650만달러 ³⁾		종업원: 50인 이하/ 자본금: 5억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1억NT\$ 미만
건설업	종업원:300인 미만/ 자본금:30억원 이하	매출액: 3,100만달러 ⁴⁾		종업원: 300인 이하/ 자본금: 3억엔 이하	자본금: 8천만 NT\$ 미만
운수업	종업원:300인 미만/ 자본금:30억원 이하	종업원: 1500명/ 매출액: 650만달러 ⁵⁾		종업원: 300인 이하/ 자본금: 3억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NT\$ 미만

주: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을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업종만 비교하였음.
 2) 업종별로 종업원수가 500인부터 1,500인까지 있음. 매출액 기준은 없음.
 3) 업종별로 매출액이 650만달러부터 2,300만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4) 업종별로 매출액 650만달러부터 3,100만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5) 업종별로 종업원 500~1,500인, 매출액 650만달러~3,150만달러, 업종세분류에 따라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
 6) EU 기준임.

〈표 IV-2〉 중소기업 범위의 질적 기준 비교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질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독립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않을 것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것	없음	없음	없음

□ 중소기업인지를 판정하는 양적 기준은 〈표 IV-1〉과 같이 각 나라마다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비교가능한 대표 업종별로 자본금 또는 매출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가능한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본금 80억원, 일본은 자본금 약 25억원, 대만은 자본금 약 23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자본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²⁵⁾.
- 반면 도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억원인 반면 영국(EU 기준)은 매출액 약 635억원으로 유럽의 양적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²⁶⁾.
- 소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출액 300억원, 미국은 매출액 약 61억원, 영국(EU 기준)은 매출액 약 635억원으로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이 미국과 영국의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음²⁷⁾.
- 건설업 또는 운수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본금 30억원, 일본은 자본금 약 25억원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중소기업 인정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 종업원 수의 기준을 비교가능한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25) 2007년 8월 17일자 일본 환율 831.15원, 대만 환율 29.76원을 적용. 이하 동일 환율 적용.

26) 2007년 8월 17일자 유로 환율 1270.81원을 적용. 이하 동일 환율 적용.

27) 2007년 8월 17일자 미국 환율 946.60원을 적용. 이하 동일 환율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300인으로 동일하고 영국(EU 기준)은 250인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500인, 운수업 1,500인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음.
- 도매업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모두 100인으로 동일한 반면 영국은 250인으로 영국(EU 기준)의 기준이 오히려 중소기업 인정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 소매업은 우리나라가 300인, 영국(EU 기준) 250인, 일본 50인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넓은 기준을 채택함.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세법에서의 중소기업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세법에서는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도 있음.
 - 조사대상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중소기업법을 두고 있음.
 - 이 중 대만은 조세법의 중소기업지원제도에서 그 범위를 정할 때 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정표준」을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기본법이 있지만 조세지원제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따르지 않고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기본법을 준용하되, 업종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어 기본법과 세법상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각국의 특징을 간단히 구분하면 <표 IV-3>에서 표시한 바와 같음.
 - 미국, 영국, 일본이 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면은 유사하지만, 일본은 자본금 1억엔 이하라는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 제도별로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표 IV-3〉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 근거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대만
① 기본법 적용					○
② 세법상 범위 적용		○	○	○	
③ 기본법 또는 세법상 기준 적용	○				

- 조세지원 대상에 대해 업종을 지정하는 국가와 업종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는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조특법에 의한 지원대상 업종에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서 열거한 업종과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열거하는 대상 업종 간에도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를 제외한 비교 대상국 중에서는 조세지원제도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3. 조세지원 단계별 중소기업의 범위

- 주요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조세지원 목적에 따라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 지원,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및 기타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지원제도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은 다른 목적(예: 투자촉진 및 투자자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세지원의 시기를 창립시점부터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창업형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위주로 분류하였음.

가.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단계에서 각국의 조세지원 내용은 다양하지만, 주로 투자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혜택, 창업시 수반되는 일정 비용에 대한 혜택, 투자손실준비금 규정 등으로 분류됨.
 -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

- 우리나라의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과 개별법에서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로 구분됨.
 - 두 가지 유형 모두 종업원 수, 매출액(자본금)의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인정하지 않음.

- 미국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을 개별적으로 설정함.
 - 창업비 공제(IRC §195)규정은 모든 창업기업(법적 형태 불문)에 적용되므로, 업종제한이나 양적·질적 기준을 따르지 않음.
 - 최저한세 적용배제(IRC §55(e)) 규정도 업종 제한없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창업기업에 적용.
 - 매출액 500만달러 기준은 미국의 중소기업법(SBA)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50만달러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일본은 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
 - 세법상 자본금 1억엔 기준은 기본법상 자본금 기준(1억엔~5억엔) 중 제일 낮은 금액임.

〈표 IV-4〉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국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① 3년간 법인세 50% 감면, ② 2년 이내 취득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③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④ 5년간 사업용재산의 재산세 면제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²⁾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개인이 다음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에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 ② 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 ③ 개인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급산입 ¹⁾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²⁾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산한 경우 ① 투융자금액의 50% ②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손급산입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²⁾	증권거래세 면제
미국	창업비 공제	창업기업	적격비용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창업비 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창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 평균매출이 500만달러 이하인 창업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이후 3년 평균매출이 750만달러 이하이면 계속 적용
영국	없음		
일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개인이 시험연구비의 매출액비율이 3% 초과, 전기와 전전기 매출 증가율 또는 창업부터 전기까지 매출 평균증가율이 25% 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1/6 이상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1/2로 축소하고 양도손실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대만	투자손실준비금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인정표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투자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에서 충당, 설정 후 5년 이내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환입

주: 1) 2003. 12. 31까지 설정한 경우 적용.

2)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자,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을 하는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대만은 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에 해당)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봄.
 - 업종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자본과 영업총수익을 중심으로 판단함.
- 창업단계에서 조세지원시 대상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고 일관된 법칙은 없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업종제한 없이 기본법상 양적 기준에서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음.

나. 연구개발 지원

-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세제지원을 하는 나라(미국)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우대혜택을 주는 나라(우리나라, 영국, 일본)가 더 많음.
 -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연수 단축으로 인한 비용의 조기상환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취함.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시 주요국 모두 업종제한을 두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구개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는 각 나라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기준이 없는 영국의 경우는 EU 규정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정함.

다. 설비투자 지원

- 각국의 설비투자 지원은 대상자산과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함.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취득 등의 설비투자시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 방식으로 지원함.
 - 설비투자 지원 목적은 창업초기 사업용자산 취득시 자금부담을 완화하거나, 산

업구조조정을 위해 특정 시설(생산성향상시설, 정보기반설비 등)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표 IV-5〉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연구개발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한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직전 4년의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세액공제(대기업은 초과분의 40%)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미국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조항 없음		
영국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공제	EU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종업원 250인 이하,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연구개발비의 150% 소득공제(대기업은 125%)
일본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조항 없음		
	인재투자촉진세제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	교육훈련비 총액의 20% 세액공제 또는 직전 2개 연도 교육훈련비 평균 증가분의 25% 세액공제 중 선택(한도액은 세액의 10%)(대기업은 총액기준만 가능)
대만	연구개발·실험비용의 소득공제 및 설비의 단축상각	중소기업인정표준에 의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 소득공제, 연구발전에 사용되는 설비의 내용연수 1/2로 단축

〈표 IV-6〉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설비투자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국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¹⁾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 자산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투자액·이용액의 7% 세액공제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미국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사업용자산 구입가격 512,000달러 미만인 기업	사업용자산 구입가에서 112,000달러(2007년)까지 비용으로 공제, 자산구입가격에 따라 공제액 감소, 512,000달러 초과시 공제액 없음
영국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	중기업(종업원 250인 이하, 매출액 1,120만파운드 이하 또는 자산 560만파운드 이하), 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 매출액 280만파운드 이하 또는 자산 140만파운드 이하)	공구 및 기계 구입비용을 당해연도에 소기업 50% 중기업 40% 공제
일본	정보기반 설비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10% 세액공제 또는 50% 특별상각 연간 300만엔 이상, 420만엔 이상의 리스비용에 적용(자본금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법인은 3,000만엔 이상, 자본금 10억엔 초과 법인은 1억엔 이상 투자금액에 적용)
	투자촉진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기구·비품(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70만엔 이상) 등의 취득(리스)시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
	기반강화세제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 리스비용 60%에 대해 7% 세액공제 기계·장치 1대등의 취득가액이 280만엔 이하(리스비용 370만엔 이하), 가구·비품 1대의 취득가액이 120만엔(리스비용 160만엔 이하)에 적용
	소액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	취득가액 전액 손금산입(연간 300만엔 한도)
대만	없음		

주: 1) 2003. 12. 31까지 설정한 경우 적용.

라.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 직접투자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투자지원조직을 통한 간접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지원이 이루어짐.
 - 주식 등에 투자한 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저율과세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과세이연이나 투자시 발생한 비용을 발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세제의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중소기업법의 입장을 따라감.
 - 그러나 미국은 투자 유도라는 목적에 따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산 또는 자본금을 중심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음.

마. 기타지원

- 상기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장 많은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파트너십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현금주의 회계방식 허용 및 일정규모 이하 연봉 근로자 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한 연금설계비용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영국은 매출액 및 사업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에 대해 첫해의 적용세율을 1% 감면해주고 있음.
 - 일본은 자본금 1억엔 이하 기업에 대해 유보금 과세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대만은 중소기업인정표준에 의한 중소기업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증치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표 Ⅳ-7〉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한국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③ 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미국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 면제	총자산 5천만달러 이하의 법인	비법인 납세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득의 50% 과세소득에서 제외
	소기업투자회사(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투자법에 의해 인정된 비공개법인(과거 2년간 자산이 1,800만달러 미만이고 당기 순이익이 600만달러 미만인 기업)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상소득에서 공제
	특별소기업투자회사(S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소기업투자회사(SBIC)와 유사	개인 및 법인이 주식을 매각한 금액을 SSBIC의 주식 및 지분을 구입한 경우 과세이연 개인: min[연간 5만달러와 (50만달러-전년도까지 과세연기된 매각익)] 법인: min[25만달러, (100만달러-전년도까지 과세연기된 매각익)]
	소기업 주식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자본금 100만달러 미만의 법인	개인이 소기업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통상손실로 공제, 최대금액은 50,000달러(부부합산신고는 100,000달러)
영국	기업투자계획	소규모 고위험 비상장회사(자산 700만 파운드 이하)	① 투자액에 대한 20% 저율의 소득세를 적용 ②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③ 다른 자산을 처분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일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① 주식양도차익에서 특정중소회사주식 투자액 공제 ② 3년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1/2 감액 ③ 양도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대만	없음		

〈표 IV-8〉 조세지원별 중소기업 범위(기타)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한국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경영권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인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의 금융채무면제의 익금불산입 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자산증여를 3년에 걸쳐 익금산입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을 3년에 걸쳐 익금산입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최저한세 우대(중소기업 10%, 대기업 15% 적용)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본법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배제
미국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과거 3년간 총매출평균 500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전년도 5,000달러 급여수급자 1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연금을 최초로 설계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설계후 3년간 적격비용 1,000달러의 50% 세액공제
영국	소기업(연간매출액 15만파운드 미만, 연간사업소득 18만 7,500파운드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한 첫 해에 해당세율에서 1% 감면
일본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 설립후 10년 이내의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중소기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족회사 유보금과세 정지
대만	중소기업인정표준에 의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으로 인한 공장용지 양도의 경우 토지증치세 최저세율 적용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 유보 허용

참고문헌

- 국세청,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2007.
- 김진수 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한국세무사회,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에 대한 고찰」, 『세무사』 제20권 제1호, 2002.
- 양현봉,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선방안」, 『KIET 산업경제』, 2006. 2.
- 정연승 외, 『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중소기업 현황』, 2006.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日本 中小企業庁, 『中小企業施策利用 ガイドブック』, 2007.
- , 『中小企業白書』, 2006.
- 臺灣 經濟部 中小企業處, 『中小企業白書』, 2006.
- DTI Online Publication, *SMS Statistics 2005*(<http://www.dti.gov.uk>)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Yearbook 2006*, 2007.
- National Statistics, *The Blue Book 2007*.
- SBA, *The Small business Economy for Data year 2005*, 2006.
- ,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 2006. 7. 31.
- SMEA Online Publication, *SME Development Statute*
(<http://eweb.moeasmea.gov.tw>)

부록: 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I. 우리나라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부표 1-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산업연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2.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전자상거래 설비

〈부표 1-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 보호시스템설비를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여 당해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를 공제

〈부표 1-3〉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

〈부표 1-4〉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지원단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부표 1-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원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3항, 제120조 3항,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 업종제한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지역 무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2의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금액요건 또는 연구개발비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 - 업종제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지원내용 중 ②③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양적기준에 대한 정의규정(구법 시행령 제27조의 2)이 있었으나, 2006년말 세법개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규정 및 준용규정은 없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 감면 ②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③ 법인설립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면제(예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한정) ④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50% 감면 ⑤ ①②③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부표 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 소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50명 미만 기타 - 10명 미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영위시: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지역구분 없이 10%) -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 영위시: 20% - 수도권외 지역 중기업: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5%) - 중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 영위시: 10%

〈부표 1-7〉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지원단계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부표 1-8〉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 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은 손금산입

〈부표 1-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 소비성서비스업(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영위업자 제외)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선택) -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인이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가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 -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인이 대학 또는 중소기업 이외에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가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40%

〈부표 1-10〉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부표 1-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금액요건 또는 연구개발비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 ○ 신기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¹⁾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의 출자로 인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주: 1) 신기술사업의 정의(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발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5.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부표 1-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
지원내용	○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거래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부표 1-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4항, 7항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
지원내용	○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창업투자조합,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부표 1-1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업종요건 구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 - 벤처기업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신고요건 구비
지원내용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으로서 내국법인 또는 창업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저가양도시 시가미달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적용하지 않음

〈부표 1-1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거주자가 다음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장래 2년 안에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거주자가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단,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부표 I-16〉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조세지원제도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부표 I-1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다음의 생산성향상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다음의 생산성향상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부표 1-18〉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적용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부표 1-19〉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전환전사업(제한없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전환후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거주자와 내국법인 적용) -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가능(거주자만 적용) -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가능(거주자만 적용)

〈부표 1-20〉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원제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전환전사업(제한없음)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전환후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거주자와 내국법인 적용)

〈부표 1-21〉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지원단계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5년 이상 계속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요건을 갖추어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요건을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부표 1-22〉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주주 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부표 1-2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3
지원단계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제휴물류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제휴상대물류법인)과 자기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교부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부표 1-2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원제도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지원단계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인 '자가물류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부표 1-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원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지원단계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적용)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부표 I -2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지원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6조 제1항 규정 준용), 동법 시행령 제61조
지원단계	지방이전 중소기업 이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부표 I -27〉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중소기업법 제2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부표 I -28〉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세지원제도	증권거래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
지원내용	○ 다음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표 1-29〉 최저한세 우대

조세지원제도	최저한세 우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내 용	○ 최저한세 10% 적용(대기업은 15%) ※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최저한세 13% 적용 ※ 최저한세: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

〈부표 1-30〉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 인정

조세지원제도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 인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우대적용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접대비로 인정 1.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수입금액에 다음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액×0.1%) ·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액×0.03%)

〈부표 1-3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조세지원제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지원단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임
지원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한도에서 환급신청 가능

II. 미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부표 II-1〉 S 법인 제도

조세지원제도	S 법인 제도
관련법	IRC §1366(a)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법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인이어야 하며 S법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estate, 신탁, 파트너십 등이고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미국내 거주자만 주주가 될 수 있음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 • 주주의 수는 100명 이하(2004년까지는 75명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세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 C법인의 소득(earning)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고 그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될 때 개인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 과세되는 데 반해 S법인은 주주단계에서 한번 과세

〈부표 II-2〉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조세지원제도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관련법	IRC §179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산구입 금액한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에게 적용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비용으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은 2002년 24,000달러였으나 2003년부터 100,000달러로 증가한 후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 후 2008년부터는 25,000달러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02,000달러, 2005년 105,000달러, 2006년 108,000달러, 2007년 112,000달러 - phase-out rule에 따라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비용공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0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의 경우 자산의 구입가격이 512,000달러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짐 • 기준액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므로 2003년 400,000달러, 2004년 410,000달러, 2005년 420,000달러, 2006년 430,000달러, 2007년 450,000달러로 증가하고 2008년 이후부터는 200,000달러로 감소

〈부표 II-3〉 최저한세 적용배제

조세지원제도	최저한세 적용배제
관련법	IRC §55(a)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초기 매출액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 적용배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첫 번째 과세연도 - 첫 과세연도를 포함한 3년 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이후 3년 평균 매출이 75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배제 유지

〈부표 II-4〉 창업비(start-up & organizational costs) 상각

조세지원제도	창업비(start-up & organizational costs) 상각
관련법	IRC §195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2004년 10월 22일 이후 창업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시 발생한 비용을 5,000달러까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지출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달러에서 감소함 - 공제하지 못한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상각

〈부표 II-5〉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면제

조세지원제도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면제
관련법	IRC §1202(a), §1202(b)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 5천만달러 이하인 C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이 되는 소기업주식(QSBS)의 요건(§1202(c),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한 소기업주식: 1993년 8월 10일 이후 발행한 주식으로 납세자에 의해 최초 발행한 주식이 취득된 것 • 적격한 소기업: C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주식 발행 직전 총자산은 5천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 • 사업활동 요건: 법인 자산의 80% 이상이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적격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 적격한 사업은 용역제공업, 금융보험업, 농림업, 숙박업 등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인 납세자(파트너십, LLCs, S법인)는 5년 이상 보유한 QSBS(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판매로 발생한 이득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IRC §1202(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SBS가 empowerment zone에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것이라면 6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IRC §1202(a)(2)) - 과세면제 한도금액: 기업이 발행하고 처분한 해의 QSBS의 조정된 세무가액(basis)의 10배 또는 천만달러에서 전년도에 배제했던 이득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IRC §1202(b))

〈부표 II-6〉 소기업투자회사(SBICs)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소기업투자회사(SBICs)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법	IRC §1242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투자회사(SBICs: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2년 동안 자산이 1800만달러 미만이고 당기순이익(NI)이 6백만달러 미만인 기업에게 자기자본, 장기부채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는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의해 인정된 비공개법인(private corporation) - 과세목적상 C법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투자회사(SBICs)에 투자한 개인은 해당 회사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통상소득에서 공제

〈부표 II-7〉 S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S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법	IRC §1044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BIC(Specialized SB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의 301(d)에 따라 SBA에 의해 인정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 - SSBIC는 SBIC와 유사하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혜택이 없는 개인이 소유한 소기업(small firms)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BIC 투자에 대한 과세이연(IRC 제10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 납세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판매대금을 60개월 이내에 SSBIC의 보통주 주식 또는 파트너십지분을 구입하는 경우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대금이 SSBIC주식 및 지분의 구입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과세 • 개인이 1과세연도에 이연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연간 5만달러와 50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이익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 별도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한도액은 2만 5,000달러와, 25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이익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 C법인의 경우 한도액은 25만달러와, 100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이익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부표 II-8〉 소기업(small business)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소기업(small business)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법	IRC §1244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발행 시점 출자자본(capital and paid-in surplus)이 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 - 기타 적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11월 6일 이후에 국내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 • 개인 투자자 및 파트너십에게 현금 및 자산(주식 등이 아닌)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것 • small business corporation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어야 하며, 해당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시점의 출자자본(capital and paid-in surplus)이 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주식에서 손실이 실현된 해의 과거 5년 동안 기업은 총 수입(gross receipt)의 50% 이상이 로열티, 임대료, 배당, 이자, 연금, 주식 및 유가증권 거래가 아닌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소기업주식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닌 정상손실로서 공제 - 통상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000달러(부부합산신고는 100,000달러)

〈부표 II-9〉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법	IRC §704
지원단계	기타조세지원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파트너십(partnership)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관이론에 따라 파트너십의 수익은 개인에게 분배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 배제 ○ 파트너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의 손실이 파트너에게 인계되므로 다른 과세소득을 조합의 손실과 상계가능 - 손실의 배분은 지분의 조정된 기초가액까지 허용

〈부표 II-10〉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조세지원제도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관련법	IRC §446, IRS Rev. Proc. 2001-10, IRS Rev. Proc. 2002-28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과거 3년 총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세법은 다음의 기업에 대해 발생주의회계처리¹⁾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법인, C 법인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 수익사업이 있는 신탁 등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현금주의 회계처리²⁾방식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및 임업(farm or tree raising) • 적절한 인적서비스 법인 • 과거 3년 총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 이하인 기업(C 법인 포함) - 최근에 IRS 행정예규(rulings)에 의해, 과거 3년 매출평균이 백만달러 이하인 sole proprietorship, S법인, 파트너십(IRS, Rev. Proc. 2001-10)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평균 매출이 천만달러 이하인 기업(firms)에 의해(IRS, Rev. Proc. 2002-28) 현금주의 회계방식이 사용됨

주: 1)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그 사건을 회계처리하는 것
 2) 손익을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것

〈부표 II-11〉 퇴직연금설계비용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퇴직연금설계비용 세액공제
관련법	IRC §45E
지원단계	기타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을 위한 새로운 퇴직연금 설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절한 연금을 설계한 처음 3년간 매년 적격비용 1,000달러의 50%를 세액공제 - 적격 비용이란 연금의 관리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필수적(ordinary and necessary)으로 발생한 비용임 ○ 세액공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firms)

Ⅲ. 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²⁸⁾

〈부표 Ⅲ-1〉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

조세지원제도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Capital allowances)
관련법	Capital Allowances Act 2001, §52 Finance Act 2006, §30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다음 조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것 ○ 중기업(Medium Business)요건 ① 연매출액(Annual turnover) : 11,2백만파운드 이하 ② 자산총액(Assets) : 5,6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수 : 250인 이하 ○ 소기업(Small Business)요건 ① 연매출액(Annual turnover) : 2,8백만파운드 이하 ② 자산총액(Assets) : 1,4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수 : 50인 이하
지원내용	○ 공구 및 기계류 구입비용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소득(taxable profit)에서 공제(First-year allowances : FYAs) - 소기업 : 공제율 50% - 중기업 : 공제율 40%

주: 2008년 4월부터 첫해년도 공제(FYAs)는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첫 £50,000 투자금액에 대한 연간 투자 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로 변경 예정

〈부표 Ⅲ-2〉 연구개발비(R&D)에 대한 비용공제

조세지원제도	연구개발비(R&D)에 대한 비용공제
관련법	Finance Act 2000, §69 및 schedule 20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EU 규정과 동일) ① 연매출액 : 50백만파운드 이하 ② 대차대조표 합계 : 43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수 : 250인 이하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R&D비용의 150%를 공제(대기업은 125%) ○ 과세소득이 없으면 R&D비용의 일부에 대해 현금으로 payabl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음(중소기업만)

주: 2008/2009년에는 주정부의 지원승인이 있으면 175%를 공제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

28) 영국 국세청, 'Tax advantages for those starting up in business' 등 관련자료 참조

〈부표 III-3〉 기업투자계획

조세지원제도	기업투자계획(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EIS)
관련법	Income Tax Act 2007, §201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의 고위험 비상장회사(small higher-risk unquoted trading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소재일 필요는 없음 - 다른 회사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것 - 비상장회사일 것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유형의 비상장 소규모회사(small company)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부분에 대한 20% 소득세를 적용(저율과세) ②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있는 개인(qualifying)이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대상주식(eligible shares)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EIS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은 투자한 전액을 받을 수 있음 - 이미 EIS에 의한 소득세 지원을 신청하고 EIS 지분의 처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손실은 투자자가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손실로 처리할 수 있음 ③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세는 EIS주식을 출자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됨 - 이러한 자본이득세는 EIS 주식의 처분시 또는 주식발행 후 3년 안에 영국 거주자가 아니게 된 때에 납부기한이 도래함

〈부표 III-4〉 경감 법인세율 적용

조세지원제도	경감 법인세율 적용
관련법	Finance Act 2006, §25 Income and Corporate Tax Act 1988 §13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회사(small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소기업(small business)의 범위를 충족해야 함¹⁾ - 과세소득(profit)이 £0~£1,500,000에 속하는 회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현재 법인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0~300,000파운드 : 19% ② 300,000~1,500,000파운드 : 19~30%까지 sliding 세율 ③ 1,500,000파운드 이상 : 30% ①②는 소규모회사만 적용

주: 재무부 발표(Budget 2007 : press notices)에 따르면, 세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007년), 21%(2008년), 22%(2009년)로 점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한편 소규모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30%에서 28%로 인하될 예정임.

1) 영국국세청, A Review of Small Business Taxation - A Technical Note By The Onland Revenue March 2001

〈부표 Ⅲ-5〉 부가가치세 산출시 저율 적용

조세지원제도	부가가치세 산출시 저율 적용
관련법	VAT Regulation 1995, §55A-55V, §57A, §69A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small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연간매출액 15만 파운드 미만(부가가치세액 제외) - 차년도 연간사업소득 18.75만 파운드 미만(부가가치세액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매입매출건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할 필요없음 ○ 부가가치세는 차년도 연간매출액에 영역별 단일세율(flat rate)을 적용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7.5% - 영역별 'Flat rate' 예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멤버십 조직, 술집, 도매식품 : 5.5% 농업서비스, 식품제조, 인쇄, 수리 : 7.5% 광고, 폐기물관리, 호텔, 출판 : 9.5% 보안, 조립 철제품 생산 : 10% 동물관리, 영화·라디오·텔레비전·비디오 생산 : 10.5% 컴퓨터수리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또는 언론 등 : 11% 금융서비스 : 11.5% 회계 또는 기장, 컴퓨터·IT 컨설팅, 법률서비스 : 13%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한 첫 해에는 해당 단일세율에서 1%를 감면

주: 1) 영국 국세청, Notice 733: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07, pp.10~12

IV. 일본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부표 IV-1〉 엔젤세제

조세지원제도	엔젤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37의13, §37의13의2, §37의13의3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8의15 제5호
지원단계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특정 중소기업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대규모회사의 자회사 제외)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시험연구비 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초과(설립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업은 5% 초과) 혹은 전기와 전전기 매출의 증가율 혹은 제1기부터 전기까지의 매출 평균 증가율이 25%가 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투자 시점에서 1/6 이상 받은 회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가 당해 주식에 투자 또는 양도 등을 함에 따라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 경우 2003년 4월 1일 이후 취득하는 특정 중소기업주식에 관해 동일연도분의 주식양도이익을 한도로 소득세의 양도소득 계산상 주식양도차익에서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공제(단, 특정 중소기업주식의 취득비에서 해당 공제액은 감액)(조특법 §37의 13) - 양도 등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1/2 상당액(양도일에 있어서 3년 초과보유하는 주식(2000.4.1~2009.3.31 사이에 취득한 것에 한함))(조특법 §37의 13의3) - 양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익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부표 IV-2〉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보기반강화세제

조세지원제도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보기반강화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10의6, §42의11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상 자산·설비 - 기본시스템 -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 - 방화벽(기본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취득한 것)
지원내용	○ 조세지원 내용 - 적용대상 취득가액 합계액 •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300만엔 이상(리스는 420만엔) • 자본금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법인: 3,000만엔 이상 • 자본금 10억엔 초과 법인: 1억엔 이상 - 취득의 경우에는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10% 세액공제 또는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50%의 특별상각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 등의 20%,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 - 리스의 경우, 리스비용 총액의 42%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등의 20%,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 - 적용기한: 2006.4.1.~2008.3.31.

〈부표 IV-3〉 연구개발촉진세제

조세지원제도	연구개발촉진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10, 42의 4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자본금 1억엔 이하)
지원내용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 당해 기업의 시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 • 시험연구비 비율 10% 이상: 10% • 시험연구비 비율 10% 미만: 8%+시험연구비비율×0.2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 12% - 단, 세액공제액은 법인세액(소득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액한도 초과액은 요건을 만족하면 1년간 이월 가능 - 시험연구비 비율이란 당연도의 시험연구비를 매출액(당연도 이전 3년을 포함한 4년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눈 것 ○ 시험연구비 증가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에 추가하여, 당해 기업의 시험연구비 증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 - 적용기간: 법인은 2006.4.1~2008.3.31., 개인은 2007~2008년 각연도 - 시험연구비 증가액이란 당해 연도의 시험연구비에서 과거 3년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의 평균액(비교시험연구비)을 공제한 잔액을 말함

〈부표 IV-4〉 인재투자촉진세제

조세지원제도	인재투자촉진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10조의7 ②항, §42의12 ②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자본금 1억엔 이하인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 적용대상 교육훈련비 - 종업원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종업원이 받는 경우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
지원내용	○ 감세액 계산방법 - 기본제도: 증가액의 25%를 감세 • 교육훈련비가 전 2개 사업연도의 교육훈련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법인세액(개인사업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특례: 총액의 최대 20%를 감세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대기업의 자회사 제외) 또는 개인사업자)은 교육훈련비의 총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법인세액(개인사업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기본제도와 선택적으로 적용) - 세액공제 한도액은 법인세액(소득세액)의 10% 상당액 - 적용기한: 2005.4.1~2008.3.31(개인사업자는 2006, 2007, 2008 각 연도분)

〈부표 IV-5〉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세제조치

조세지원제도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세제조치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69의4
지원단계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특정 소규모택지를 상속한 개인사업자·중소법인 소유주 - 거래상장이 아닌 비상장주식을 상속한 중소기업인의 소유주
지원내용	○ 특정소규모택지(사업용·주거용)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 평가액을 경감 - 400㎡까지의 특정사업용 택지와 240㎡까지의 특정 주거용택지는 평가액의 80%가 감액되는 감세 특례(조특법 §69의4)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경감 - 비상장주식을 상속한 개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3년 이내에 발행회사에 상속주식을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로 과세

〈부표 IV-6〉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25의2, §61의4, §61
지원단계	기타 조세지원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본금 1억 엔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 있어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등의 각종 공제 외에, 종업원급여공제, 청색신고특별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부금공제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됨 ○ 법인기업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해 경감세율(소득 800만엔까지 22%)이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교제비의 일부(연 400만엔까지의 교제비 지출 중 9할까지) 손금산입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협동조합 등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등 특별법인은 법인세율이 보통법인(30%)보다도 경감(22%)되는 것 외에 조합사업의 이용분량배당의 손금산입, 조합가입금의 익금불산입, 보유소득의 손금산입 등의 제도가 있음

〈부표 IV-7〉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42의6, §10의3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p>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설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로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16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합이 210만엔 이상)인 것 - 특정의 기구·비품(전자계산기, 디지털복합기)으로 1대 또는 1기, 또는 동일 종류의 여러 대의 합계 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합이 160만엔 이상)인 것 - 일정의 소프트웨어(합계 취득가액이 7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 합계가 100만엔 이상) - 보통화물자동차(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내항선박(단 취득가액의 75%가 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단, 자본금이 3천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특별상각만 적용) ○ 리스: 리스비용 총액의 60%에 대해, 7%의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008. 3. 31.

〈부표 IV-8〉 중소기업기반강화세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기반강화세제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10의4, §42의7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p>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p> <p>○ 적용 대상</p> <p>①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 풍속영업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제외)</p> <p>②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타분야재휴신사업분야개척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 중 일정의 성장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p>③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에 의거한 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 중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p> <p>* ②, ③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이 대상</p> <p>○ 대상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①, ②, ③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28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액이 370만엔 이상)의 것 - 상기 ①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비품(전자계산기에 대해서는 16~32비트, 주기억용량 32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에 한함)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액이 160만엔 이상)의 것
지원내용	<p>○ 취득의 경우: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p> <p>○ 리스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비용 총액의 60%에 대해, 7%의 세액공제 - 2008.4.1. 이후는 현행의 리스세액공제는 폐지(소유권이전 외 finance 리스 계약에 의한 것은 취득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 <p>○ 적용기한: 2009. 3. 31.</p>

〈부표 IV-9〉 중소기업의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제도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제도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28의2
지원단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인 등 ○ 대상 자산 - 취득가액이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
지원내용	○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산입 ○ 특례대상이 되는 손금산입액의 상한은 연간 300만엔 ○ 적용기한: 2008. 3. 31.

〈부표 IV-10〉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정지

조세지원제도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정지
관련법	조세특별조치법 §68의2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前 사업연도 종료 시 자기자본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설립 후 10년 이내의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중소기업자 ○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인정사업자(신사업분야개척을 실시하는 자)
지원내용 과세	○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제도란 동족회사(3인 이하의 주주가 전체 주식 보유가 50%를 초과하는 회사)가 내부유보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상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유보금 과세가 정지됨 - 세율은 유보금이 연 3,000만엔 이하인 경우 10%, 연 3,000만엔~1억엔은 15%, 연 1억엔 초과는 20%

V. 대만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²⁹⁾

〈부표 V-1〉 토지증치세의 균등(平均) 납부

조세지원제도	토지증치세의 균등(平均) 납부
관련법	중소기업발전조례 제33조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간접지원)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투자자가 공업구에서 중소기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은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 ○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는 그 토지투자를 한 연도부터 5년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출자한 토지는 중소기업의 자가사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 - 만약 자가사용에 제공되지 않거나 재양도시에는 미납한 토지증치세를 투자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함

〈부표 V-2〉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토지증치세 최저과세구간의 세율 적용

조세지원제도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토지증치세 최저과세구간의 세율 적용
관련법	중소기업발전조례 제34조
지원단계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다음 원인 중의 하나로, 공장을 공업구·도시계획공업구 또는 본 조례 시행 전에 투자장려조례(獎勵投資條例)에 규정된 공업용지로 옮기면서 원래의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이전시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증치세는 최저과세구간의 세율로 징수함 : ① 도시계획 또는 구역계획의 실시로 인해서 그 구분사용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공장용지 ② 오염방지·공공안전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 및 보호의 필요가 있지만, 개선이 곤란해서, 자발적(적극적)으로 공장이전을 신청하고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輔導)로 이전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이전해서 건설한 후 3년 내에 그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공장 이전 전에 매각했거나 이전하면서 원래의 공장용지에 대해서 감면된 토지증치세는 추가적으로 과세(補徵)

29) 대만 중소기업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부표 V-3〉 연구개발·실험비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 기기설비의 단축상각 등

조세지원제도	연구개발·실험비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 기기설비의 단축상각 등
관련법	중소기업 발전조례 제35조
지원단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기술의 개선 및 신상품의 개량을 위해서 지불한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은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減除)가 허용됨. ○ 연구발전·실험 또는 품질검사용에 제공되는 기기설비는 그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것은 소득세법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에 기재된 연수를 1/2로 단축해서 감가상각 함. ○ 단축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음.

〈부표 V-4〉 유보잉여에 대한 과세

조세지원제도	유보잉여에 대한 과세
관련법	중소기업 발전조례 제36조
지원단계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음 - 위의 한도를 초과한 잉여금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 10%의 사업소득세를 추가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1998년 이후로 유보된 잉여금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표 V-5〉 투자손실준비금의 처리

조세지원제도	투자손실준비금의 처리
관련법	중소기업 발전조례 제36조의 1
지원단계	중소기업투자촉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간접지원)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앙재정주관기관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서, 기투자총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에 충당 ○ 설정한지 5년 내에 만약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설정한 준비금을 제5차년도 수익으로 전환 처리 ○ 공사가 해산·철회·폐지·합병 또는 양도로 인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는 투자손실준비금에 누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익으로 전환해서 처리

세법연구 07-04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2-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